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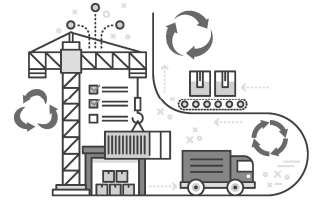
2023. 11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정집

Construction Waste Disposal and Recycling-related
a book of regulations





목차

I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1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환경부 예규 제734호, '23.10.16 일부개정)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127
	(환경부 고시 제2016-59호, '16.3.24 제정)	
	3.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131
	(환경부 고시 제2023-212호, '23.9.6 일부개정)	
	4.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153
	(환경부 고시 제2023-233호, '23.9.27 일부개정)	
II	순환골재 관련 규정	171
	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173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17.9.27 일부개정)	
	2.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179
	(환경부 고시 제2017-176호, '17.9.27 일부개정)	
	3. 순환골재 품질기준	18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2호, '21.12.22 일부개정)	
	4.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2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39호, '22.11.2 일부개정)	
	5.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2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3호, '22.7.20 일부개정)	

Ⅲ 처리용역 입찰 및 평가 관련 규정 235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37
(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19.10.8 일부개정)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271
(환경부 지침, '23.7.17 일부개정)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287
(환경부 예규 제630호, '18.1.16 일부개정)

Ⅳ 기타 규정 301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303
(환경부 예규 제790호, '23.6.28 일부개정)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327
(환경부 고시 제2021-259호, '22.1.1 전부개정)
 3.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335
(환경부 예규 제627호, '18.1.4 제정)
-

I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734호, '23.10.16 일부개정]

환경부 예규 제734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총 칙

1. 일반사항

가. 목적

- 1) 본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나. 법적근거

- 1) 「폐기물관리법」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다. 적용범위

-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관련 (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해 설】

1. 본 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 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동 지침의 제정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 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서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영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다.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하는 자를 포함)를 말한다.
- 마.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 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2) 콘크리트 제품
 -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 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 사.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 아. “순환진흙”이란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을 말한다.
- 자. “순환토사”란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한다.

II.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

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류	분류 번호	종류	세부내용
가연성	40-02-06	폐목재	○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방부제, 기름 오염된 것 제외) ○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40-02-07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비닐, 시멘트 포대 등
	40-02-08	폐섬유	○ 보온덮개 등(단, 석면함유물질 및 불연성물질인 폐유리섬유 등은 제외)

I.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분류	분류 번호	종 류	세 부 내 용
	40-02-09	폐벽지	○ 폐종이류, 벽지류 등
불연성	40-01-01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 제외
	40-01-02		○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 우레탄 등 탄성포장 및 페인트 포장재 제외
	40-01-03		○ 폐벽돌 ○ 내화벽돌은 제외
	40-01-04		○ 폐블록 ○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
	40-01-05		○ 폐기와 ○ 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 연약지반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 슬라임 ○ 토사와 건설오니가 섞여 토사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가능 ○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중 “부유물질” 및 “산과 알칼리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 가능 ○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유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40-03-11	폐금속류	○ 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40-03-12	폐유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창유리 등

분류	분류 번호	종 류	세 부 내 용
	40-04-10	페타일 및 페도자기	○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타일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가연성·불연성 혼합	40-04-11	페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 (보드형태)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제외
	40-04-12	페판넬	○ 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40-04-14	혼합 건설폐기물	○ 영 별표 1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중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 ① 불연성에 가연성과 페보드류 및 페판넬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②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과 페보드류 및 페판넬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①’의 사례 > 건설폐재류(95%) + 가연성폐기물+페보드류·페판넬 (5%)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②’의 사례 > 페보드류·페판넬(95%) + 가연성폐기물(5%) </div>
기타	40-90-90	그 밖의 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페타이어, 폐고무, 폐유리섬유 등

【해 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등 해당 구조물 등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오시공 또는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세류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오니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중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단,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 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타설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 콘크리트, 시멘트 포대 등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공사현장의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적법하게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공사종류	세부 내용
토목공사	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복구공사 등
도로공사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산업설비공사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기타 건설공사	미장·방수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 철도·궤도 공사 등

※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3.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총 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5.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6. 건설폐토석의 범위에는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모래·자갈 등이 해당되나,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된다.
 -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땅파기) 또는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이 해당된다. 악취 등으로 자연상태의 흙이나 오니 등을 활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버려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7.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받는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염토양과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토양과

폐기물을 분리하여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하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압축공기로 시공면에 뿜는 콘크리트), 폐전선, 오니 등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건설 폐기물로 분류한다.
9.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 또는 벤토나이트 혼합물 등)하는 무기성오니는 일반적으로는 건설오니로 분류되나,
 - 시멘트가 주성분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페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 상태인 페콘크리트가 되면 페콘크리트로도 분류할 수 있다.
10. 건설현장에서 설치·운영중인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에 해당한다.
 - 다만,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질오염물질 중 “부유물질” 및 “산과 알칼리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건설오니로 분류할 수 있으나,
 - 건설공사 외 다른 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는 폐수처리오니(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11.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가연성·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발견된 폐기물이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하거나, 건설폐토석 등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 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2.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기 곤란한 페타이어, 폐고무, 폐유리섬유 등의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한다.

13. 건설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하게 공사현장 작업여건이나 기술적으로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된 상태로 배출이 가능하나,
-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혼합 상태	배출 기준
불연성+가연성+폐보드류·폐판넬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가연성+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 또한,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이나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혼합된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폐기물은 인력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14. 특히,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되,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덧씌워진

경우로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분리 장비의 현장 출입이 불가능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거나,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절삭하여 분리한 후 콘크리트에 잔류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혼합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다.

15.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ניות에 해당
 - 다만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함수율이 낮아(70% 이내로 한정한다) 흘러 내리지 않고 추가 탈수·건조가 불필요한 토사상태의 것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협의하여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6. 공사안전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등 관련 건설기준 등에 따라 필요에 의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기존 구조물의 필요성(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발주자 및 관리자(감독관)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결정하되,
 - 철거 또는 굴착한 구조물을 다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폐자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17. 건물 등에 방치 또는 투기되어 있던 폐기물(냉장고, 가구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방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한다)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건물 등을 철거하려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 스스로 폐기물을 전량 적정처리 하도록 하고,
 - 지자체 또는 개발조합 등은 건물 등 철거 이전에 폐기물의 별도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 18. 건설폐기물의 폐섬유 중 유리섬유, 암면 등은 규사성분 등이 함유되어 소각처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 매립처리할 수 있다.
- 19.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도·도로·호안 등에 설치된 블록은 건설폐기물 중 폐블록에 해당되나 그 성상이 콘크리트와 동일한 경우에는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종류별 처리방법

가.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적인 처리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분류	종류	처 리 방 법
가연성	폐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가능 시 -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 ○ 방부제, 유류에 오염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
	폐합성수지 폐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가능 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 ○ 재활용 불가능 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다만, 소각처리 불가능 시 최종처분업(매립)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
	폐벽지	
불연성	건설 폐재류 페콘크리트 페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 페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재활용
가연성· 불연성 혼합	페보드류 페판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해 설】

1.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하며, 그 처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유도 등)하고,
둘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셋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2.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4. 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한다.
5. 다만,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콘 생산 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6.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추고, 건설오니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7.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나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영 제4조제1항 제3호 각 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중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으며,
 - 건설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8. 재활용이 곤란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 처리하면 된다.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3호가목 4)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페레미콘·페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5톤 이상)하는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10.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나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는 석면함유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종류	처리방법
폐석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제거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 ○ 폐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며,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로 위탁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 처리규정 적용)

종류	처리방법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매립, 소각, 재활용 대상 등)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 다만,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영 제9조 제1항제1의2호)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 등을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3. 분별해체

가. 영 제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가능한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나. 분별해체 대상폐기물은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 1)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2) 분별해체 제외 건설폐기물 : 건설오니,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영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해 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성 악화와 순환골재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혼합배출 저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 구조물 철거과정에서 순환골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 처리방법이 다른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별해체(선분별·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2.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14종)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 (순환골재 생산, 5종)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파분쇄·선별후 순환골재 생산)
- (가연성, 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소각 또는 재활용)
- (불연성, 3종)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매립 또는 재활용)
- (혼합, 2종) 폐보드류, 폐판넬(가연성, 불연성 분리 후 소각·매립·재활용)

3. 분별해체 주요 공정 예시

① 건축설비 제거



② 내장재(벽체) 제거



③ 내장재(천장 보드류) 제거



④ 전선, 수도관 제거



⑤ 외장재(판넬, 유리 등) 제거



⑥ 구조물 철거



III.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1)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거나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 특히, 적절한 처리비용에는 '18.1.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거나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비용 외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 운반 및 보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 8]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구분하여환경관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2)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3호 「공사입찰유의서」 (20.12.24)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할 수 있다.
- 3) 위 1)의 경우를 제외한 입찰에서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해 설】

1. 법 제15조제2항 및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 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 배출량은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등 해당 구조물 등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장재, 폐합성수지, 페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오시공 또는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세륜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오니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한다(단,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자(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배출자 신고 등의 처리책임이 있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는 계약 관련 다른 법령,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폐기물이 추가발생한 불가피한 사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 시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적절한 처리비용이 산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현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에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 특히, 적절한 처리비용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등이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거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할 경우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이 반영되어야 하며,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위탁처리 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가연성 또는 불연성 폐기물의 혼입량, 발생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에 따른 매립지 수명단축, 불법매립, 소각 등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시 적정 처리가 불가능한 최저가격을 선택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 계산하여 공표하는 가격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3호 「공사입찰유의서」(20.12.24)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 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3호(20.12.24.)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5.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계상 및 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3항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따라 계상 및 관리한다.
6.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 처리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1.1.1) 제74조 제2항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21.1.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7.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 등에게 적정한 비용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분리·선별의 경우 통상적으로 타이어식 백호(1.0m³) 1대와 보통인부 4인의 조합으로 공정이 구성되나, 작업여건 및 공기 등을 고려하여 투입장비 및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 분리·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편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산정’에 수록된 굴착기 관련 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시중노임을 참고할 수 있다.
8. 장기계속 공사 등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9.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의 경우 가연성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성상의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찰공고 또는 배출자신고 시 발생 폐기물의
 종류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배출 시에는 가연성폐기물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이 경우 실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는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기준
 및 방법을 고려하여 배출자신고를 변경하고, 용역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 특히 배출되는 성상은 ‘혼합건설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출되는 성상과
 관계없이 입찰공고 상의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로 처리토록 해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상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여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법 제5조(발주자의 의무)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본문 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개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건설공사 시 현장 선별 후 유가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설공사 배출현장에서 시공사 및 철거업체 등을 통해 선별·분리되어 유상
 매각되는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그 수익이 대부분 시공사 등으로 귀속되므로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공제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이중
 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공제해서는 안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2)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로 분리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 3) 폐석면(폐슬레이트 등) 등 지정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시설의 소유자,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 신축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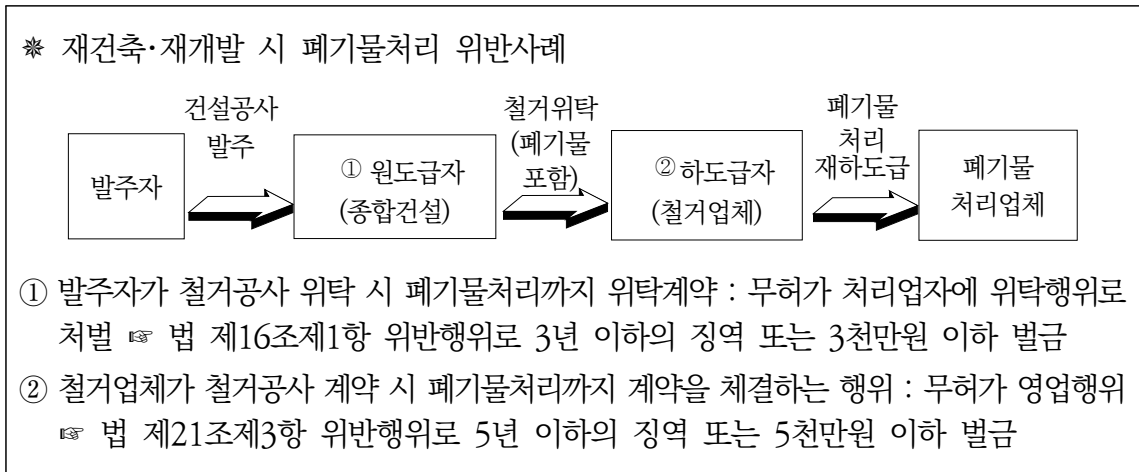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각각 발주하여야 하므로,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당해 건설현장에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원도급자의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는 해당 건설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발주)으로 발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탁처리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 여부는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 중 위탁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법 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공사(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에 따라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 예)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 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5. 당초 분리발주 되었던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자보수(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 발주자는 당해 폐기물을 설계변경(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량에 대해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비 반영 등)을 통하여 기존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하거나 별도의 처리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6. 동일한 발주자가 여러 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용역 발주 시
 - 건설공사 건별로 각각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여러 건의 공사를 묶어 1건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방식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여러 건의 공사를 모아 1건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 계약은 건설공사 현장별로 체결·관리 하여야 한다.

7. 또한 배출현장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단일공사건으로 발주되어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8. 분리발주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6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담이행방식의 발주 등은 지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 하여야 한다.
10. 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혼합된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하며,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1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분리발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낙찰업체 선정 시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 뿐만 아니라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하여야 한다.
 -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확인서류 중 직접생산확인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의미한다.

1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발생한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21.12.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재료비) 제4항에서 계약목적물에서 발생하는 부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이미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 받은 처리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구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체결 등

가. 수탁처리능력 확인

- 1)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법령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 2) 수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으려는 처리업자(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재활용업자 등)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과 처리를 함께 수탁받으려는 경우에는 1장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해 설】

1.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①허가증 사본, ②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용역 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확인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처분업자,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최종재활용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처리업 허가증 사본, ②「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 사본, ③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확인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증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공제조합 가입자는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으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작성방법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1.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2. 수탁자(처리자)는 ⑦란부터 ⑱란까지 공통기재하고 아래의 구분에 따라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 - 수집·운반업자: ⑳란, ㉑란, ㉒란 - 중간처리업자, 중간처분업자, 재활용업자 : ㉓란, ㉔란, ㉕란, ㉖란 - 최종처분업자 : ㉗란, ㉘란, ㉙란, ㉚란 - 종합처분업자 : ㉛란부터 ㉜란까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㉝)	3. ㉝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안에 “○” 표시하고, 그 이행보증금액을 기재

구 분	작성방법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분 또는 활용시설 (19)	<p>4. 수탁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시설의 종류별(파쇄·분쇄 시설, 탈수·건조시설 등)로 산정·기재</p> <p>- 동종시설이 여러 개(병렬) 있는 경우 합산</p>
수탁자의 처리 능력 또는 처분 능력(22)	<p>5. ㉔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등 수탁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p> <p>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p> <p>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p> <p>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p> <p>1)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p> <p>2)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p> <p>3)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p> <p>4)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p> <p>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p> <p>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p> <p>1)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p> <p>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은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을 기재</p> <p>1)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p>

구 분	작성방법
수탁 가능여부 (㉔)	6. ㉔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기재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㉕)	7. ㉕란 중 가.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기재 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 :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기재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 :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수탁(예정)량란 :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기재 마. 수탁(예정)방법란 :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기재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체결

-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위·수탁 표준계약서 별표 1 참조)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 나)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 다) 건설공사명
 -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 마)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 바)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 사)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등
- 3) 또한,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4)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가) 공공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다)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해 설】

1.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3자 계약)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집·운반 허가 없이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배출자가 아닌 자(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등)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수집운반 포함)을 체결할 수 없다.
 - 특히, 민간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배출자가 철거업체 등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까지 일괄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철거업체 등이 이를 저가로 처리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7. 배출자는 처리업체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적정 지급 등 위·수탁계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을 하도급업체로 전가하는 등 계약관련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8. 택지개발지구 내 1~3공구의 공사가 각각의 발주를 통하여 각각의 시공사들을 선정한 공사인 경우라면 1~3공구의 공사는 비록 발주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각의 공사현장별로 배출자신고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로 다른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여 재활용할 수 없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가. 근거 : 법 제17조 및 규칙 제9조
- 나.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다.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라. 제출 및 첨부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보관방법 및 처리계획

2)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규칙 제8조의2제1항)

-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위탁 시
 - ☞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2조 관련) 사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규칙 별지 제9호의 2) 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시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관련)가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마. 변경신고

1) 변경신고 대상(규칙 제9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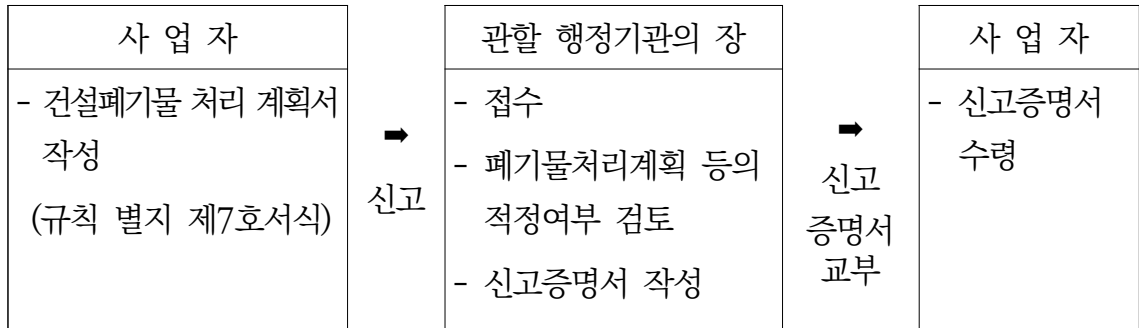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변경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3)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 설】

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 폐기물 발생예상량, 발생주기, 분리배출계획, 보관방법, 처리계획,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하여야 하며,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시 “공사기간”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건설공사의 착공일”이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과 관련 없이 실제로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3. 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내역’란에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므로,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6. 당초 배출자 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기관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동일한 1건의 공사에서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을 경우의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는 당해 공사현장별로 관할행정기관에 각각 신고(5톤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관할행정기관이 같은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이 넘어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폐기물처리 계획서에 각각의 공사현장별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9.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으로 예상되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공사라고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 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12.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둬들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의2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건설폐기물을 처리(수집·운반, 중간처리, 재활용, 처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법 제66조제1항제6의2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3.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다른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14. 또한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처리방법이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거나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한다.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도 포함)
15.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제외하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될 시에는 배출자가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야 한다.
16.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90일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17.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 또다시 발주자가 아닌 자(원도급자 등)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다.
18.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준공전 하자 보수(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되어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의 준공 후 건설시공사의 하자보수 등에 의한 재시공에 따라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다.
19.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66조제2항제2호)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근거 : 법 제18조 및 규칙 제10조

나. 작성자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

다. 작성시기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 다만, 건설폐기물 총 배출량이 1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또는 상·하수도관의 파열·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같음

라.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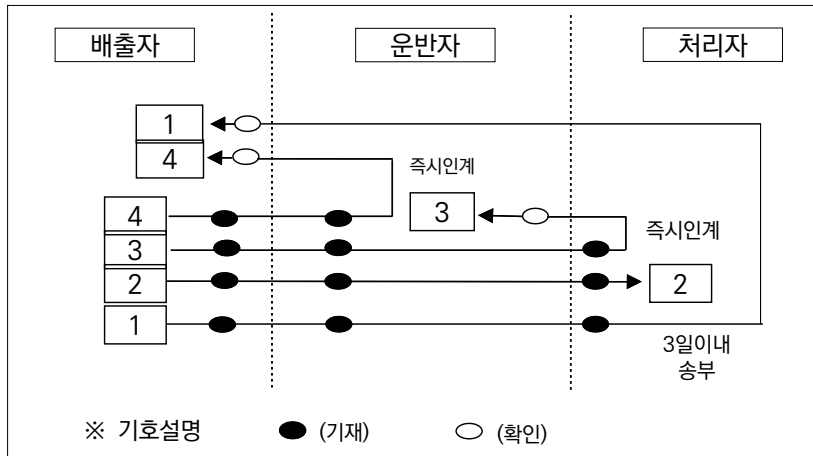
-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구체적인 입력내용·방법·시기는 규칙 별표 2의2 참조)
- 다만, 간이인계서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계서를 작성
 - 총 4매[(1-청색)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해 설】

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 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다만,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나 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제6의2호 및 제66조제3항제1의3호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4.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5.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6.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터 (4)까지로 한다.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법 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 가. 근거 : 규칙 제5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6호
- 나. 신청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 다.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
- 라.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 마. 발급대상
 -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
 - 2)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그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내용

- 1) 규격 : 원의 지름은 100mm, 바탕색은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2) 기재내용 : 차량증 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업체명,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발급일자

【해 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 발급 신청인(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개시 1일 전까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시차량의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영업용만 해당함)라도 수집·운반증 발급은 가능하다.
 - 차량이 신청인외의 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소유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4. 전용차량의 증차·감차·교체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수집·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보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월 이내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경우에는 다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
6.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가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기재되는 상호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상호와 동일하게 발급하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상호가 아닌 공동대표 개별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7. 동일차량으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2 이상의 처리업에 대한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8.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시 반드시 하나의 배출현장에만 적용하여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배출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여러 배출현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9.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한다.

IV.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1. 보관기준

- 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 마.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 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해 설】

1.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 별도의 분리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을 분리보관 시설로 옮겨오기 전까지 발생장소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소형마대(항공마대) 등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 보관된 혼합폐기물은 반드시 정해진 보관시설로 운반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 분리배출 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사업장 규모, 배출 또는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또는 처리량, 보관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산정해야 한다.
 - 보관시설은 폐기물의 입·출하가 용이하고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암롤트럭이 운반하는 암롤박스 등을 배치하거나 보관장소에 구획을 정하여 분류별로 배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부지협소 등의 사유로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 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7호(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서식의 “(16)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란에 보관장소의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한 경우라도 폐기물을 흘러내리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폐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형마대(항공마대) 등에 담아 실내에 보관하는 등 흘날리거나 흘러내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건설폐기물의 보관개시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보관시설(보관부지 등)로 옮긴 날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장 부지 내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의 확장을 위한 변경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우선 이행하여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생산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의 경우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사업장 외부 보관시설에서 보관이 가능하다.

2 수집·운반 기준

- 가. 건설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마.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신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16.7.1 시행)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강화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및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이고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을 말한다.

사.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해 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시에는 법 제13조 및 영 제9조 등의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배출기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구분되어 배출된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수집·운반과정에서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히, 분리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금속에 준하는 재질은 강화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탄소섬유 재질 및 인장 하중이 500N 이상이고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을 말하며,
 - 인장하중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또한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일시에 다량 발생·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마목에 따른다.

3. 중간처리의 기준 등

- 가.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다. 건설폐토석 등 건설폐재류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나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 중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유해물질 함유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에 한함)

- 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4)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페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5톤 이상)하는 폐콘크리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의 재활용기준을 만족하는 콘크리트 폐반침묵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 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아. 건설폐재류 및 재활용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도록 노력한다.
- 자.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해야 한다.
- 차.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해 설】

1.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할 경우 법 제13조 및 영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의 경우 0.5%)이하가 되도록 중간처리 하여야 하며,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3.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4. 철도의 선로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5.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건설오니 중 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페벤토나이트가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1% 이하)과 재활용기준(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7. 분리배출 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8. 입도가 20mm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절삭된 페아스콘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V.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1. 정의

- 가.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 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구분	대상	의무사용제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 아스팔트콘크리트제조용 순환골재를 25% (중량기준) 이상 사용한 제품	- GR 인증제품 - 환경표지 인증제품 - 중기청 성능인증제품 - 단체표준인증
콘크리트 제품	-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중량기준) 이상 사용한 제품(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 - 순환골재를 50%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 고시한 제품	

【해 설】

-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제2017-1711호, '17.12.15) 하는 기준으로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준수여부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
4. 순환골재의 각 용도별 시험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각 용도별 시험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성적서로 사용이 가능하나, 각 용도별로 다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과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하며,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 제품생산방식(가열 또는 상온 등)에 관계없이 아스팔트콘크리트제조용 순환골재를 중량기준으로 25% 이상, 콘크리트 제품의 경우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중량기준으로 50% 이상 사용한 것(50%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제품 포함)으로 규정한다.
6.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GR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환경마크인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GR 또는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 포함된다.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가. 순환골재(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제외)

- 1) 도로공사용
- 2) 건설공사용(성토용·복토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

- 3) 주차장 또는 농로의 표토용
- 4)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 7)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 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나.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

- 1) 도로공사용
-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2) 콘크리트 제품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라.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

- 1)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 4)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해 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는 영 제4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2.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는 자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사용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공급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순환골재 생산·공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은 순환골재가 사용하려는 용도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이외에도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사용 전에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여 물과 접촉되는 수직·수평 배수층, 경사면(우수 등에 의한 용출수, 유출수 발생지역), 우물, 지하수, 하천, 호소, 해역 등의 인근으로부터 30m 이내(지하수의 유출이나 물의 범람이 가능한 지역의 거리), 금속관 또는 암거 근처의 되메우기(알칼리성에 의한 금속부식 방지), 투수성 포장도로 하부(물의 침투로 인한 지하 용출가능), 지하수위 상부 1m 이내(지하수 용출 가능거리) 등의 지역에 활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유출수의 알칼리성을 고려하여 pH를 저감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환경관련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배수로,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 유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재활용용도 중 도로공사용은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등이 포함되며,
 -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반드시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페아스팔트콘크리트가 혼합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성토용·복토용, 표토용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9. 건설공사 용도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용도를 말하되, 성토용·복토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에 한하며,
 -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 범위에는 건물신축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공사 등이 해당된다.
10.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콘크리트 제품으로 구분하여 각 품목에 따른 재활용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11. 건설오니와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각각 적합하게 처리하여 생산된 순환진흙과 순환토사는 건설공사의 성토·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2. 순환토사를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농지의 성토기준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나,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 가. 의무사용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
- 나.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으로 고시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17.9.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17.9.27)

1) 순환골재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I.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마.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 단지의 개발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 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p>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p> <p>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p> <p>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p>		
<p>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p>		
<p>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p> <p>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p> <p>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p> <p>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p>		
<p>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p>		
<p>마.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p>		
<p>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p>		
<p>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p>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아.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다. 의무사용 예외적용

- 1)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함)
-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해 설】

1.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에 따른 품질규격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시 기초다짐 또는 채움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 대체 잔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4. 이러한 기관들이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2017. 9.27)에서 규정된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에 따라 공사설계에 반영하거나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다만, 발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 6.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7. 당초 발주 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 8. 당초 발주 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거나 의무사용량 또는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발주된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연차별로 공사내역 등의 갱신을 위해 별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발주하는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의무사용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등

가. 근거 : 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30조

나. 대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

다. 제출시기 :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라. 제출서류

-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계획서(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가계약체결공고서 또는 통보서로 대체 할 수 있음)
- 3)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도지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함

마.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이행여부 확인

- 1) 발주자로부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요청할 수 있다.
- 2) 해당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을 토대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시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시점이 차이가 있어 사용계획서 제출시까지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 동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란에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00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하였음' 등으로 사유를 기재하고, '설계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법 제66조 제2항제1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해당 발주자가 제출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와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상호 검토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VI.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 사업계획 검토(법 제21조)

가.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나.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계획서
 - 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
-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외

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여부 검토

- 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 확인
-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수집·운반 또는 처리 계획서, 시설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
-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및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 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 4)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등 검토
 - 7) 필요시 현지조사, 사업계획서 보완 등 조치

라. 사업계획의 변경

- 1) 제출 서식 :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2) 제출 시기 :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 3) 제출 대상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공통사항 :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자본금 규모의 변경
 - 수집·운반업자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수집·운반차량의 변경
 - 중간처리업자 : 파쇄·분쇄시설, 분리·선별시설, 탈수·건조시설·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변경, 보관시설 및 계량시설의 변경, 장비의 변경(굴착기 또는 수집·운반차량), 사업장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기술능력의 변경
- 4) 제출서류 : 변경사항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 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계획서, 시설 설치계획서,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①항 내지 ⑬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재항목별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항목	주요 검토내용
제출인 (①~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상의 제출인은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대표는 각 개인의 명의를 연명하여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상호를 만들 수 있음
상호(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가 기존 처리업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 여부 검토. 다만,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 이상 다른 업종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업종(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업종이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
자본금(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검토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 - 기본적인 허가조건에 해당되는 처리시설, 수집·운반차량, 사무실(연락 장소) 등의 자산 가치를 자본금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기재항목	주요 검토내용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은 영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등을 검토 -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류 등으로 통합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됨 - 가연성 또는 매립대상 폐기물 등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은 영업대상 폐기물에서 제외하여야 함 - 특히, 영 별표 1 제17호나목에 해당하는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됨
시설·장비설 치예정지 (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처리업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가 아닌 시설·장비가 설치될 장소를 기재하였는지, 수집·운반업의 경우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토
사업착수 예정일(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설치 또는 확보를 위한 사업 착수 예정일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업 허가신청 예정일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기한내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허가신청 예정일까지 시설·장비 등의 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 확인
시설·장비 설치 내역(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된 시설·장비 설치내역이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안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무실 및 기술능력, 계량시설 외 시설·장비 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보관 및 중간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계획량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되어 위탁 처리되는 폐기물량보다 많은 지 여부를 검토하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허가 시점에서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계획량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의 경우 처리시설별로 기본 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준수가능 여부, 시설·장비 규모의 적정 여부,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가능 여부,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수집·운반차량이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가능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5. 또한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배출가스,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또는 저감시설 등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특히,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6. 기술능력 확보계획서의 경우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 산업기사는 동종의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검토 시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Ⅶ-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한다.

8.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함)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추가 의견 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검토되어야 할 타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등 환경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이 있다.
9.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등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의 자문 및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0. 아울러, 허가권자는 필요 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서 반려 또는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
11. 사업계획서의 반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법 제2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

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 할 수 있다.

12.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합 통보는 불가하다.
13.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 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합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14.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에 사업변경계획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는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동일한 사업장 부지에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건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① 내지 ⑦, ⑭ 및 ⑮을 기재하고, 변경사항 및 사유에 관련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7.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할 때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며,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가. 근거 : 법 제21조 및 규칙 제12조

나. 업종구분

- 1)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
- 2)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다. 허가권자

- 1)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지사
- 2) 수집·운반업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라. 허가기준 : 법 제21조제3항, 규칙 제12조 및 별표 2

1) 중간처리업

구 분		허가 기준
시설	파쇄· 분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600톤 이상(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 -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분리· 선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 - 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탈수· 건조시설 (선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는 시설 - 기계식 탈수·건조시설 - 자연식 탈수·건조시설 :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선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구 분		허가 기준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계량시설	○ 1식 이상 -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함
장비	굴착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착기 1대 이상
	수집·운반차량 (선택사항)	○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 - 환경기능사 자격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6개월 이상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로 협회에서 인정한 자로 대체 가능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 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비산먼지·침출수·약취 방지 건물 또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해당
		처리 시설 - 다음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 설치 ◆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보관 시설 - 다음의 시설을 모두 갖추어 것. 다만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 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구 분	허가 기준
	<p>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함)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함) ◆ 폐기물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덮개 ◆ 바닥포장 ◆ 지붕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2) 수집·운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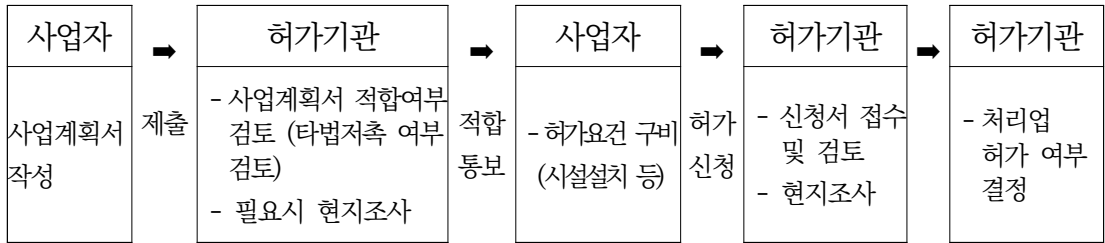
구 분	허가 요건
장비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시의 경우 5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임대의 경우 임차계약서로 확인
자본금 규모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마.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 제외)
-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 제외)

- 7)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바. 업무절차



-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사업자→허가기관)
- 2)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허가기관)
- 3) 적합통보(허가기관→사업자)
- 4) 허가요건 구비(사업자)
- 5) 허가신청(사업자→허가기관)
- 6) 허가신청사항 적합성 검토 및 현지조사(허가기관)
- 7) 처리업 허가(허가기관→사업자)

사. 처리업의 허가

- 1)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규칙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허가증 또는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 2) 허가증 교부 시 영업대상건설폐기물은 반드시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각각 기재

아. 허가조건의 교부

- 1) 허가권자는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 ①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②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③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그 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수수료 :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해 설】

1. 법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간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는 건물이나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물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말하며,

- 시설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함), 폐기물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건설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 다만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로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란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소재한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대기환경보전법령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주거·상가 등의 건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는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가 있어 해당 건물의 지표면 또는 도로에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6. 시·도지사는 제출된 허가신청서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여부, 건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및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등(수집·운반 차량외 장비 및 사업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무실 적합여부(임대의 경우 임차계약서로 확인)를 주요 검토사항으로 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사항	주요 검토내용
<p>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확인.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할 수 있음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합 통보한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다만, 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표 1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대표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었는지 여부 확인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
<p>시설 및 장비 명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순환아스콘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수집·운반차량 및 중장비 등 시설·장비별로 시설·장비명, 설치위치, 설치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 수집·운반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차량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 소유의 것인지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 중장비 및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개별화물자동차 또는 개별중기 등을 소유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각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가 가능 ○ 장비 및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 검토 ○ 계량시설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사용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계량값이 올바르게 시스템으로 자동전송 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보관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보관하기에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보관표지판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검토사항	주요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보관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준공도면 등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하여 처리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p>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별로 시설명, 시설규모(방지시설 포함) 등 설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부대시설을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의 설계도면, 처리공정 설명사항 기재 여부, 배치도 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설치계획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도서만 요구 ○ 처리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사항에 해당할 경우 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건물 또는 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등
<p>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및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로 대체
<p>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소지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대체인력의 경우)를 통하여 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p>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근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창고의 규격 : 가로×세로×높이 또는 밀면적(치수표시)×높이 - 보관시설은 해당 보관창고 또는 보관시설에서 최대한 보관가능한 용량을 산정(가급적 확인이 용이한 형태로 유도) - 허용보관량에 대한 밀면적(가로×세로 등 치수표시)과 높이 제시

검토사항	주요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 및 적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설치 - 지도·점검시 출자만으로 보관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 배치도는 가능한 한 축적 1/1,000으로 표시하고, 보관시설의 규격 및 보관형태에 대하여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 1/100 이하)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 ○ 폐기물의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 시 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 * 폐기물종류별 대표값과 유사한지 여부를 허가기관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확인 * 증빙방법 : 폐기물의 보관용적과 비중을 곱한 값 등이 허용보관량 이내임을 명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확인 ○ 허가기준에 속하는 수집·운반차량, 사무실 등의 자산가치를 자본금으로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
사업장 부지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장부지 확보 여부 확인
기타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받았는지 여부 확인 ○ 허가신청자 및 법인의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기타 처리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다.

8.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 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대상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
수집·운반차량	○ 차종·적재능력·차량번호·적재함 양쪽옆면 부착 또는 표기 여부 등
보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위치, 규모, 재질,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표시, 보관 표지판 설치 적정여부 등 ○ 사업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다음의 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함)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함) - 폐기물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덮개 - 바닥포장 - 지붕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p style="margin-left: 20px;">※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시설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p>
계량시설	○ 위치, 1회 최대계량 톤수의 적정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시험계량), 기록방법,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입력 여부 등
굴착기	○ 종류·제원·등록번호 등
기술능력	○ 기술인력의 자필근무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

현지조사 대상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 처리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등이 허가신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와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 생산시설의 종류 및 생산능력 등이 허가신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9.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 및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0. 허가신청 서류의 반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및 법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처리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반려할 수 있다.
11.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불허가 통보는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법 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
12.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허가신청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가. 근거 : 법 제22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

나. 신청서식 : 규칙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

다. 변경허가 대상

- 1)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 3)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의 증차
-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함)
-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7) 허용보관량의 변경
-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라.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
 -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다)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라)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이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 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2)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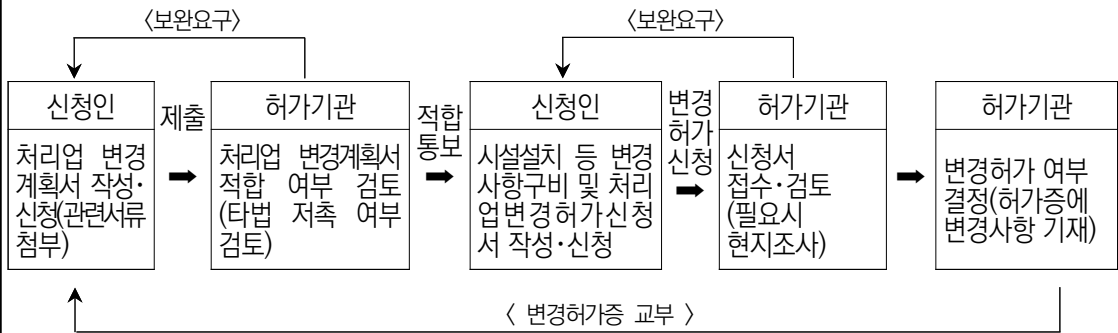
다)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이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마)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마. 업무절차

- 1) 처리업 변경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허가기관)
- 2) 처리업 변경계획서 및 배출시설 관련서류 적정여부 검토(허가기관)
- 3) 변경계획 적합통보(허가기관→신청인)
- 4) 변경허가사항 구비 및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적합통보 받은 날부터 1년(수집·운반의 경우 6개월)이내에 제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5) 변경허가신청(신청인→허가기관)
- 6)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필요시)
- 7) 변경허가증 교부(허가기관→신청인)



바.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수수료 :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

【해 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 전에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처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춘 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업 변경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신청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처리업 변경계획서 검토시에는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5. 또한 변경허가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며, 구체적인 변경허가 사항 시 검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허가 내용	제출서류	주요 검토내용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대상 건설 폐기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상세내역 ○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추가하고자 하는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이 기 허가받은 시설 또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변경허가 내용	제출서류	주요 검토내용
종류가 변경	또는 폐쇄되는 시설 및 장비 설치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및 사업장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 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여부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확인 - 동일한 사업장부지(동일지번 또는 여러개의 지번) 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에 해당되지 않음 ○ 변경되는 소재지의 사업장부지 면적이 허가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 - 허가권자가 다른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소재지의 허가권자가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접수받아 기존 허가권자로 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처리하여야 함
운반차량의 증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운반차량의 증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차되는 수집·운반차량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 확인 ○ 증차되는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확인 ○ 증차되는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수집·운반차량의 감차 및 임시차량의 증·감차는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발급된 수집·운반증의 반납 또는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생산 시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인지 여부 확인 ○ 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변경허가 내용	제출서류	주요 검토내용
처리용량 30% 이상의 변경 및 주요 설비의 변경	○ 처리시설 변경내역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생산시설의 구조변경의 적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검토 등 확인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 여부 검토
허용 보관량의 변경	○ 변경되는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 허용보관량 변경의 필요성 및 적정 여부 검토 - 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6.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사항(변경신고 대상이나 그 밖의 기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허가 검토 시 이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7.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는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Ⅶ-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4.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가. 근거 : 법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13조의2

나. 신청서식 :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다. 변경신고 대상

- 1) 상호의 변경(권리·의무승계로 인한 상호의 변경제외)
- 2) 대표자의 변경(권리·의무승계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제외)
-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의 감차 또는 교체

라. 신고기한

- 1) 상호 및 대표자 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2) 그 외 : 변경 전

마. 제출서류

- 1) 처리업 변경신고 신청서
- 2)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 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에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이나 운반차량이 감차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
3.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1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4. 변경신고 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신고 내용	제출서류	주요 검토내용
상호 및 대표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변경되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24조의

변경신고 내용	제출서류	주요 검토내용
변경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계약서 등)	○ 이전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 - 허가권자가 다른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소재지의 허가권자가 변경신고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존 허가권자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처리하여야 함
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	수집·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 계획서	○ 기존에 발급된 수집·운반증 회수조치

5. 임시보관장소 승인

가. 근거 : 법 제13조의2 및 규칙 제4조

나. 신청서식 :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다. 신청기관 :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라. 신청대상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마. 임시보관장소 승인

1) 승인요건

-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한 경우

-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19.4.18일까지만 허용)

2) 승인기준

-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 할 것
-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m³ 이하로 할 것

3) 승인조건(시·도지사가 검토하여 부여 여부 결정)

-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할 것
-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4) 제출서류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 서류
-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바.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1) 변경승인 대상

-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 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 임시보관 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2) 변경승인 시기 : 변경 전

3) 제출서류

-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신청서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 방지사설 기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다음의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 폐기물의 흘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 바닥포장
- 지붕 덮개시설

※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2)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할 것

【해 설】

1. 법 제13조의2제2항 및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임시보관장소는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로 한정되며,

-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m³ 이하로,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 폐기물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 전체로 물을 뿌리는 시설
 - 바닥포장 및 지붕 덮개시설(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상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사유서,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 등 보관장소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보관장소의 평면도 및 형태를 설명하는 개략도(축적 1/100 이하) 등을 첨부해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승인을 할 때는 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 신청인이 적정한 지 및 설치가 필요한 지 여부,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및 규모 등이 승인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보관기간 준수 가능여부, 보관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비산먼지 등 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6. 임시 보관장소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폐기물 유출 방지대책 수립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승인을 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 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임시보관 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연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변경승인신청서 검토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며,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하며,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양수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가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승계되지 않으며,
 -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가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임시보관장소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폐업·휴업 등의 신고(법 제33조)

가. 신청서식 :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나.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 신고시기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전

라. 제출서류

- 1) 휴업·폐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 2) 재개업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해 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휴업·폐업 신고서 접수 후 미처리 폐기물의 방치여부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서 검토 및 현지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휴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동 사실을 처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Ⅶ.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법 제27조제1항)**

가. 근거 : 법 제27조제1항

나. 승인권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다. 신청자 : 건설폐기물 배출자

라.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설치승인 신청서 첨부서류(규칙 제16조제1항)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해 설】

1.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처리시설 설계도서,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바닥면적이 330㎡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3.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외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받아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시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서 상의 기재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량 등의 처리 계획이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시설의 확보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6. 또한,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량 등 처리계획이 재활용 계획에 비해 과다 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생량 및 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예상배출량,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사항이 적정한 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공정 설명사항 기재 여부 및 설계도면,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적정한지(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상에 중간처리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었는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시기, 종류, 배출주기 및 배출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7.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Ⅷ-6. 배출시설 등의 의제 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8.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하며,
 - 검토되어야 할 타 법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등이 있다.

9.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의 자문 및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0.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 소유이거나 임대(배출자가 직접 계약 임대) 등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므로, 배출자가 해당 파쇄·선별 시설 등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가동 및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즉,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다.
11. 또한, 발주처는 동일하나 시공과정에서 공구별로 분할 발주되어 각각 배출자 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공구 내에서만 재활용가능(공구별로 이동 불가)하다.
1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건설공사 도급내역에 건설폐기물의 처리까지 위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제62조제1호)
13. 설치승인권자는 서류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또한 설치승인신청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4.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설치승인신청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서 단기일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검토결과 설치승인 신청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 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승인신청서를 불승인 할 수 있다.
- 다만,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검토결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승인 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승인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또한 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2.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규칙 제16조)

가. 변경승인(신고) 대상

- 상호의 변경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변경승인(신고) 시기

- 상호변경 : 승인(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그 외 변경 : 변경 전까지

다.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14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호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처리용량이 증가하거나 주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해 설】

1.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 검토 시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고,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제출서류	검토요령
상호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변경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 ○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상호의 변경 없이 대표자의 변경만 있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 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건설폐 기물의 상세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이 승인(신고) 받은 시설에서 적정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여부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	소재지 변경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동없이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한 변경은 대상에서 제외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여부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 ○ 변경되는 소재지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등 검토
처리용량 증가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변경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되는 시설이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검토 실시
주요 설비 변경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변경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되는 시설이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검토 실시

2. 승인권자(신고수리권자)가 다른 소재지로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소재지의 승인권자(신고수리권자)가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존 승인권자(신고수리권자)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 해체 후 재시공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의 대상시설 규모는 승인받은 단위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2개 이상의 시설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Ⅷ-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5. 변경승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시설설치 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신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 승인(신고)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신고) 가능하다.
6.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법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는 법 제66조제2항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법 제27조제4항)

가. 근거 : 법 제27조제4항

나. 신고수리권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다. 신고자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라.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2) 설치신고서 첨부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마. 변경신고

1) 대상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시설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주요설비의 경우만 제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해 설】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설치목적, 운영기간, 운영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 신고서를 검토하며,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수리권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험·연구용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법 제28조)

가. 근거 : 법 제28조

나. 신고수리권자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허가권자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자 : 승인 또는 신고수리권자

다. 신고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라. 신고시기 :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마.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해 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규칙 20조에 따라 해당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시 신고서 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이 허가 또는 승인, 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 유지·관리계획서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요령, 주요 예비부품 목록, 처리시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승인, 신고 시 타 법에 의한 절차 등을 이행토록 부여한 조건의 이행여부,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권자에게 검토를 의뢰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Ⅶ-6. 배출 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하면 된다.

4. 사용개시신고서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허가증 또는 승인서, 신고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통보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폐기물관리법」 제50조)

가. 신고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나. 신고수리권자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허가권자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자 : 승인 또는 신고수리권자

다. 신고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라. 신고시기 :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 이전

마. 제출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서

【해 설】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 이전에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신고권자는 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법 제30조)

가. 의제 처리되는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물환경보전법」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나. 의제처리 시기

- 1)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 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수리 시

- 2)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수리 시
- 3)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 시

【해 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 제28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물환경보전법」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시·도지사는 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서, 신고서 및 사용개시신고서(이하 “사업계획서 등”이라 한다)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 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은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아닌 사항(예, 법적 배출허용기준 10%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제출서류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보완사항을 종합하여 일괄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6.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신고서 검토결과 적정통보를 받으면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승인서 또는 신고증명서 포함)를 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동 사항과 함께 신청인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7.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포함)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신고증명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8.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동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결과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9.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 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Ⅷ.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보존 및 보고서 제출

1.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보존

가. 근거 : 법 제32조 및 규칙 제24조

나. 대상 :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다.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

1) 건설폐기물 배출자

- 건설폐기물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규칙 별지 제26호서식)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3호서식)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라. 기록의 보존 :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해 설】

1. 배출자, 처리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컴퓨터 등)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나, 전산기록매체에 작성·입력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법 제66조제3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보고서 제출

가. 근거 : 법 제34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

나. 제출대상자 :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다. 제출내용 등

1) 건설폐기물 배출자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배출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다음연도 2월말까지(매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다음연도 2월말까지(매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다음연도 2월말까지(매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 ☞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하여야 함

【해 설】

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 건설폐기물을 2개년 이상에 걸쳐 배출하는 경우 배출실적이 없는 해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는 처리업체의 확인 서명(또는 날인)이 된 세금계산서(영수), 영수증, 처리확인서(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31호서식)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4.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보고서 제출

- 가. 통계조사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나. 통계조사 내용 :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주체별 현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현황,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다. 제출보고서 :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라. 제출기관 및 기간
 - 1) 시장·군수·구청장 :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에게 제출
 - 2)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마. 제출방법 :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IX.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참고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1. 용역명 :
2. 배출장소 :
3. 운반장소 : 출발지 - , 도착지 -
4. 처리장소 :
5. 결제조건 :
6. 위·수탁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7. 계약일반조건 : 붙임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키로 한다.
8. 위·수탁물량 및 용역금액

(단위 : 원, VAT 별도)

폐기물 종류	단위	물량 (예상배출량)	단가		용역금액 (물량×단가)	처리 방법
			운반비	처리비		
총계						

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증명하기 위하여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배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배출자의 연대보증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수집·운반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인
	허가번호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인
	허가번호	전화번호		
처리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인
	허가번호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인
	허가번호	전화번호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배출자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자가 이를 수집·운반하고 처리자가 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단가는 상기 내용과 같으며, “배출자”는 일정 금액의 선금(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운반자”, “처리자”와 협의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반자”와 “처리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의2(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3조(배출자의 의무) “배출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2일 전에 “처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반자의 의무)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자의 의무) ①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처리자”는 “배출자”로부터 용역이 종료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계약서 작성) ① 용역계약의 이행 중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② 단가·물량 등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배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배출자”는 계약금액 조정기한을 연기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 중 일부 미비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인계서 작성) ① “배출자”와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폐기물 배출 및 인계서 마다 전자인계서를 작성한다.

② 다만, 건설폐기물 총 배출량이 1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또는 상·하수도관의 파열·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다.

제8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배출자”는 “운반자”와 “처리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적어도 매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운반자”와 “처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계약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9조(완성대가의 지급) ①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는 “운반자”, “처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배출자”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 발행) ①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용역수행 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기성청구서와 함께 “배출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배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관련 세법 등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배출자”가 계약사항 외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2. “운반자”가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할 경우
3.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처리가 우려될 경우
4.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 및 수행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었을 경우에 기 운반·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배출자”는 기성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 체결 후 처리장에 반입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책임은 “처리자”가 진다.

② 계약기간 중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영업정지 등으로 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즉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운반자”와 “처리자”는 이를 수용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배출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2]

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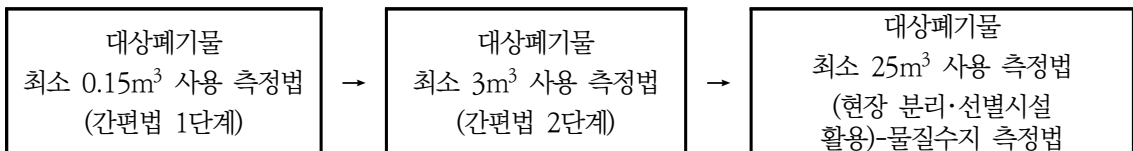
1. 개요(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

- 현장에서의 혼합건설폐기물 판정방법은 판정하고자 하는 대상 폐기물을 일정량 채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7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 한 후 이에 대한 질량을 측정한다.
-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최초 투입한 혼합건설폐기물과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리·선별한 산출량의 합이 같아야 하는 “물질수지” 측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즉, “2. 가) 물질수지에 의한 측정방법(정밀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참고〉

※ 이물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7호 “혼합건설폐기물” 정의에 따른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가연성(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을 말함(이하 ‘이물질’ 이라 한다)

- 다만, “물질수지”측정 방법은 대상 폐기물 중 대량(25m³)의 폐기물을 분리·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분리선별 시설에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물질수지” 측정 방법 이전에 간편하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필요함.
- 즉, 0.1~3m³ 정도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이중에 포함된 이물질의 질량을 측정하여 혼합 건설폐기물을 판정하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간편 측정법은 현장에서 간편하게 측정하여 배출자와 처리자간의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방법임.
- 간편법을 이용할 경우 소량의 대상 폐기물로 혼합건설폐기물을 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 대상이 소량이고 전적으로 인력선별에 의한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그림 1] 혼합건설폐기물 판정을 위한 측정법 적용 단계

2. 혼합건설폐기물 측정방법

가) 물질수지에 의한 측정방법(정밀법)

- 판정시설의 기준 : 혼합건설폐기물 판정을 위한 주요 설비는 반입된 폐기물을 일정 크기 이하로 파·분쇄할 수 있는 파·분쇄시설과 이물질 분리를 위한 분리·선별시설로 구분함.

〈표 1〉 판정시설 기준

구분	파·분쇄시설 ¹⁾	분리·선별시설 ²⁾		
		스크린	송풍	자력
차수	3차	1차	1차	1차

주¹⁾ 파·분쇄시설은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로 파·분쇄하기 위한 시설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일반 시설인 조크러셔, 더블조크러셔, 콘크러셔를 기본으로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일정 크기로 파·분쇄하는 설비일 경우 상기와 다른 파·분쇄 시설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동일 설비를 반복하여 처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주²⁾ 분리선별 시설은 종류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스크린, 송풍, 자력을 기본으로 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력에 의한 선별이 가능한 것은 인력 선별 후 각 해당하는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한다.

- 측정대상 폐기물의 양 : 25m³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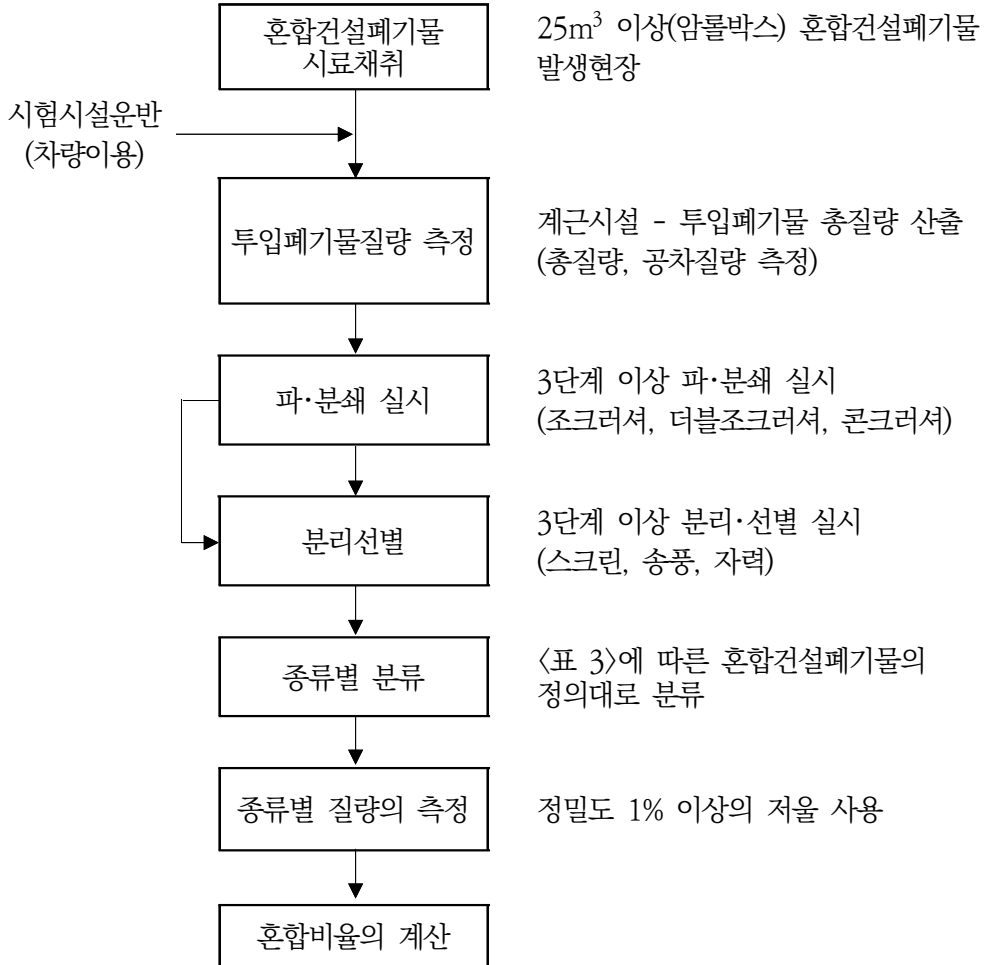
- 측정을 위한 주요 측정 장비

〈표 2〉 측정 주요 장비

구분	범위	성능
저울	선별된 이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정밀도는 시료질량의 1% 이상
계근설비	건설폐기물의 총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근설비	계량에관한법률 제20조(검정)에 따라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필한 계근 설비
시료채취용기	최소 25m ³ 용량의 철재 박스를 사용(암롤박스, Arm-Roll Box)	
질량측정용 용기	물이 흡수되거나 시료가 이탈되지 않는 금속재 용기	

- 판정용 시료 : 시료의 질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수분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건조 등을 실시하지 않음

○ 판정절차



[그림 2] 혼합건설폐기물 판정 절차

- 물질수지 측정 후 질량의 합 : 물질수지 방법에 의한 선별전·후의 폐기물 질량값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분쇄 및 분리·선별과정에서 기계장치 및 이송장치 표면 등에 무기물질이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시료의 손실(오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입전 폐기물의 총질량에 비하여 분리·선별 후 합산한 결과 발생하는 질량의 차는 불연성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합산하도록 한다. 다만, 투입전 폐기물의 총질량에 비하여 분리·선별 후 합산한 결과 발생하는 질량의 차가 5% 이상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물질 혼합비율의 계산

$$\text{이물질 혼합율}(\%) = \frac{\text{이물질(가연성+폐보드류·폐판넬)의 총 질량}(kg)}{\text{투입전 건설폐기물의 총 질량}(kg)} \times 100$$

○ 건설폐기물의 구분

〈표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건폐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불연성 건설폐기물	가연성 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
종류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페벽돌, 페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페타일 및 페도자기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페벽지	페보드류, 페판넬,

나) 간편법 1 (용적 0.15m³ 이상 측정법 - 0.03m³ 표준용기 사용)

○ 적용범위 :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는 이물질의 혼합율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

○ 측정용 설비

- 1) 저울 : 혼합건설폐기물을 측정하기 위한 저울은 측정 질량에 대하여 정밀도 1% 이상 감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 2) 시료 채취용 용기 : 혼합건설폐기물을 측정하기 위한 폐기물 측정 용기는 용적 0.03m³의 것으로서 투입과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3) 표준체 : 이물질을 분리·선별하기 위한 체(체망 크기 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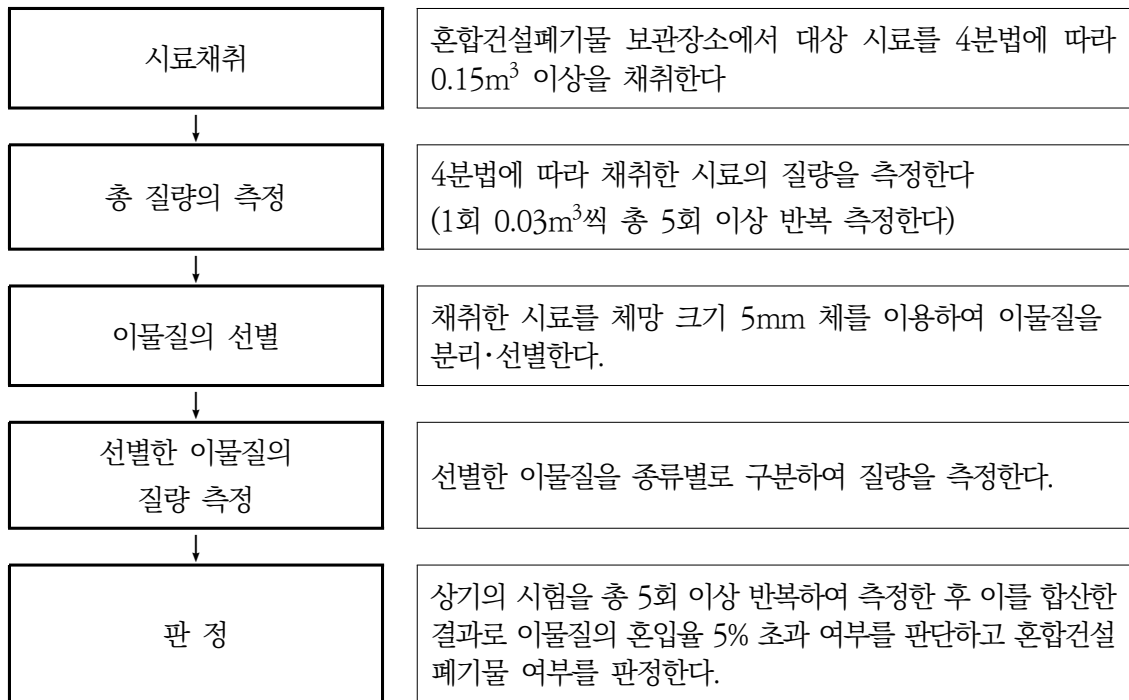
○ 판정용 시료

- 1) 시료는 판정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측정에 필요한 폐기물의 양은 측정량(0.15m³)보다 충분히 많게 준비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용기가 0.03m³ 이므로 총질량의 측정은 5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한다. 즉, 1회에 0.03m³ 씩 5회 이상을 측정하여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 후 이물질의 혼입량을 산출한다.
- 2) 시료의 질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수분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건조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 3) 측정에 사용되는 시료의 최대 치수는 40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0mm 이상의 시료는 측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물질 혼입량을 측정하기 위한 판정용 시료 중에 40mm 이상의 가연성 건설폐기물, 페판넬, 페보드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40mm 이하로 만든 후 측정한다.

○ 판정절차

- 1) 시료채취 : 판정하고자 하는 대상시료에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제2장 제1항에서 규정한 ‘성상에 따른 시료의 채취방법’에 따라 0.15m³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2) 혼합건설폐기물의 질량 측정 : 용적 0.03m³의 측정용 용기에 충분히 혼합건설 폐기물을 채운 후 질량을 측정한다.
 ※ 용기에 시료를 채울 때 빈 공간이 없이 밀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다짐봉으로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 3) 시료 용기의 시료를 5mm 체를 이용하여 이물질의 육안으로 분리·선별한다.
- 4) 측정대상 건설폐기물을 0.03m³씩 5회 이상 측정한 용적의 합이 0.15m³ 이상이 될 때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측정한다.
- 5) 분리·선별된 이물질의 각각 질량을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하여 이물질의 혼입율을 산정한다.

$$\text{이물질 혼입율(\%)} = \frac{\text{이물질(가연성+페보드류·폐판넬)의 총 질량(kg)}}{\text{측정한 건설폐기물의 총 질량(kg)}} \times 100$$



[그림 3] 간편법 1 측정절차(0.03m³ 표준용기 사용)

다) 간편법 2 (용적 3m³ 이상 측정법 - 1m³ 톤백 사용)

○ **적용범위** :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중 혼합건설폐기물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는 이물질의 혼합율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

○ 측정용 설비

- 1) 저울 : 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저울은 측정 질량에 대하여 1% 이상 감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 2) 계근시설 또는 저울 : 판정용 건설폐기물의 총질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근대 또는 매달림 저울은 측정 질량의 1% 이상 감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 3) 시료 채취용 용기 : 건설폐기물을 측정하기 위한 폐기물 측정 용기는 용적 1m³ (톤백) 또는 이와 동일한 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용기로 한다.
- 4) 표준체 : 이물질을 분리선별하기 위한 체(체망 크기 25mm)

○ 판정용 시료

- 1) 시료는 판정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측정에 필요한 폐기물의 양은 측정량(3m³)보다 충분히 많게 준비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용기의 용적은 1m³ (톤백)이며, 이 용기의 특성상 전체 용량의 50~60% 정도 밖에 채울 수 없으므로 총질량의 측정은 5~6회 분할하여 실시한다. 즉, **1회에 0.5m³ 이상씩 측정한 건설폐기물의 용적의 합이 3m³ 이상이 될 때까지 측정 후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여 이물질의 혼입량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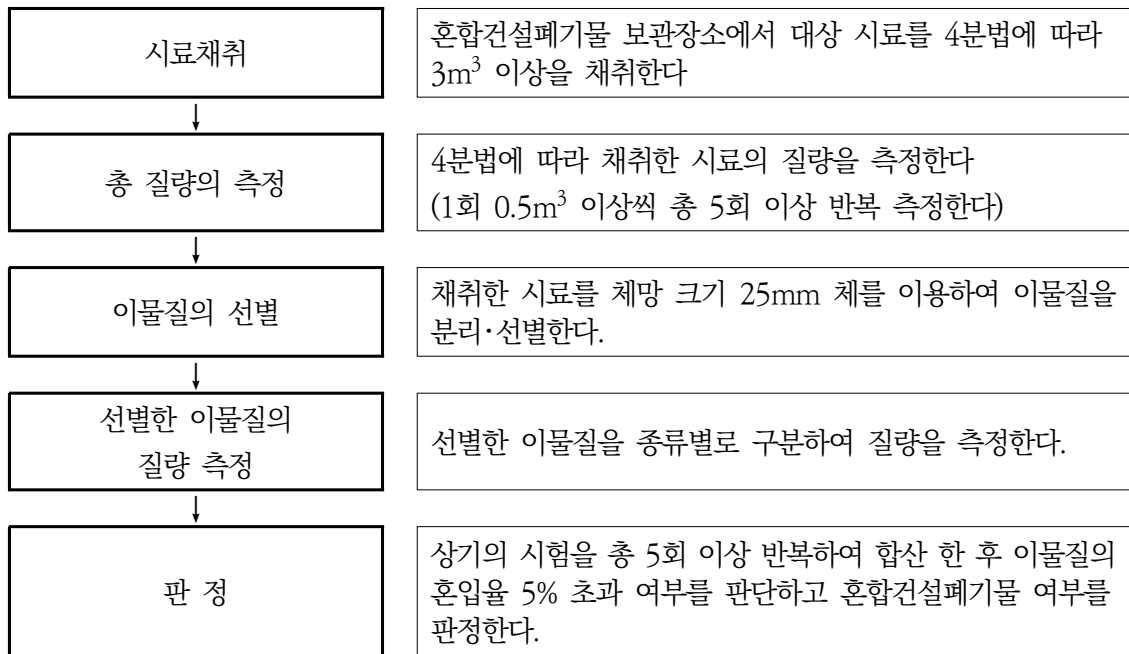
※ 측정에 사용되는 톤백(1m³)은 정확한 용적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정 시 3m³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곤란하다. 다만, 1회 측정 시 톤백 내에 절반 이상(50%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담아 측정하여 질량을 산출하도록 한다.

- 2) 시료의 질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수분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건조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 3) **측정에 사용되는 시료의 최대 치수는 100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00mm 이상의 시료는 측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물질 혼입량을 측정하기 위한 판정용 시료 중에 100mm 이상의 가연성 건설폐기물, 폐판넬, 폐보드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100mm 이하로 만든 후 측정한다.

○ 판정절차

- 1) 시료채취 : 판정하고자 하는 대상시료에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2장제1항에서 규정한 ‘성상에 따른 시료의 채취방법’에 따라 3m³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2) 혼합건설폐기물의 질량 측정 : 용적 1m³의 측정용 용기에 충분히 혼합건설폐기물을 채운 후 질량을 측정한다.
 ※ 용기에 시료를 채울 때 빈 공간이 없이 밀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굴착기의 삽 등으로 10회 이상 다짐을 실시하도록 한다.
- 3) 시료 용기의 시료를 25mm 체를 이용하여 이물질의 육안으로 분리·선별한다.
- 4) 측정대상 건설폐기물을 0.5m³ 이상씩 5회 이상 측정한 용적의 합이 3m³ 이상이 될 때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측정한다.
- 5) 분리·선별된 이물질의 각각 질량을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하여 이물질의 혼입율을 산정한다.

$$\text{이물질 혼입율(\%)} = \frac{\text{이물질(가연성+폐모드류·폐판넬)의 총 질량(kg)}}{\text{측정한 건설폐기물의 총 질량(kg)}} \times 100$$



[그림 4] 간편법 2 측정절차(1m³-톤백 용기사용)

3. 간편법 시연

- 혼합건설폐기물 판정을 위한 시험 방법은 현장의 조건 및 보유 장비 여부에 따라 다음의 2가지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다.

구 분	방법 1	방법 2
측정 방법	○ 이물질 선별법 (소량-0.03m ³ 측정용기 사용)	○ 이물질 선별법 (대량-1m ³ (톤백) 측정용기 사용)
주요 장비	○ 질량 측정 용기(0.03m ³) ○ 저울(판정용 건설폐기물과 선별된 이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 1% 이상의 저울)	○ 질량 측정용 용기 또는 마대(1m ³ 이상) ○ 저울(판정용 건설폐기물과 선별된 이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 1% 이상의 저울)
건설 폐기물 측정량	○ 0.15m ³ 이상 (1회 0.03m ³ 의 건설폐기물 총 질량과 선별한 이물질을 측정하고 이를 5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합산한다)	○ 3m ³ 이상 (1회 0.5m ³ 이상의 건설폐기물 총 질량과 선별한 이물질을 측정하고 이를 5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합산한다)
판정 방법	○ 5회 이상 시료채취를 실시한 후 이물질을 선별하고 이때 폐기물 총 질량 중 이물질의 질량을 비교하여 백분율 산출	
이물질 선별 구분	○ 폐기물 내 이물질을 선별하여 백분율화	

○ 0.03m³ 표준용기 사용 간편법 1 시험 절차



용적 0.03m³ 용기의
질량측정(3.58kg)



측정용 건설폐기물



4분법에 의한 시료의 구분



측정용기에 건설폐기물
투입(중간 다짐 실시)



상부면의 마무리



건설폐기물 총질량
측정(54.76kg)



건설폐기물 총질량
측정(54.76kg)



이물질의 1차 육안 선별



5mm체를 통한 이물질
2차 선별



이물질 측정을 위한 용기의
질량 측정



이물질 질량 측정

[그림 5] 간편법 1 측정절차(1회 0.03m³, 총 0.15m³ 이상 측정(5회 이상)하여 합산)

○ 1m³ (톤백) 사용 간편법 2 시험 절차



공차 중량



측정용 건설폐기물



공차 중량 + 시료 중량



이물질 육안 선별



이물질 중량 측정 1회



이물질 중량 측정 1회



이물질 중량 측정 2회



이물질 중량 측정 2회

[그림 6] 간편법 2 측정절차(1회 0.5m³ 이상, 총 3.0m³ 이상 측정(5회 이상)하여 합산)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덤프개 재질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6-59호, '16.3.24 제정]

환경부 고시 제2016-5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재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 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

부칙<제2016-59호, 2016.3.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3-212호, '23.9.6 일부개정]

환경부 고시 제2023-21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 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입력의 무자 또는 그 대행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별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삭제
- 아. 삭제
- 자. 삭제
- 차. 삭제
- 카. 삭제

5. “전자장부”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 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5의2. 삭제

6.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ARS”라 한다)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인수 내용을 전화기(유·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업무 수행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접수·검토·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인수내용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9. 삭제

- 제3조(올바로시스템 주소)** ① 올바로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로 하고,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올바로시스템 앱으로 하되 추가로 올바로 시스템 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 ② ARS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 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 가. 기초정보 확인·등록 및 제출
- 나. 인증서 관리
- 다.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 마.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 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입력
- 사.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허가 신청 및 변경
- 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확인
- 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 가.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 나. 업무담당자 등록
-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 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처리과정 등 검색·확인
 - 마. 교육 및 홍보
 - 바. 전자장부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 사. 제14조의3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3. 전산처리기구의 장
- 가.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확인
 - 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 다. 인계·인수정보와 장부입력사항의 확인·수정 및 통보
 - 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의 협력
 - 마. 자료의 보존
 - 바.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사. 교육 및 홍보
 - 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보고
 - 자. 그 밖에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삭제 <2011. 7. 22.>

제7조(자료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기초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삭제 <2008. 8. 21.>

제9조(계정관리) ① 올바른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른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 자료,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사용자에게 계정(ID)을 알려 주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폐기물 인·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 ① 사용자가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1조(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배출자(「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자나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해야 한다.

②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 처리장소, 처리 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③ 폐기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약입력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④ 폐기물배출자가 예약입력한 경우 확정입력 시점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값을 활용하여 전자인계·인수서에 처리위탁량 확정입력
2.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인계·인수서에 차량번호 확정입력

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해야 한다.

제11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대행) ① 「건설폐기물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수집·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수집·운반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한다.

- ② 폐기물수집·운반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 인계자명을 올라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 ③ 폐기물수집·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해야 한다.
- ④ 폐기물수집·운반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전달받았으나 인계서 상 인계일자에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 ①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라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② 삭제 <2008. 8. 21.>

③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았으나 배출자가 입력한 인계일자로부터 2일 이내에 폐기물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수집·운반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신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처리실적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입력기한 후에 수정하여 발생하는 인계정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입력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계정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을 초과한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시스템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1.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한 후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경우
2.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③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계·인수일자 및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계·인수·처리내역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장부를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제14조의3(보고서 제출) ①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건설폐기물법」 제34조 및 「폐기물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 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자(「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 ① 천재지변,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전자인계서 또는 전자장부를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ARS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호의 별지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
 2. 유·무선 전화 통화
- ② 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2008. 8. 21.>

제17조(인계정보의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하였거나,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사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제14조제2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의 경우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에 공지한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천재지변,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3.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인계서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전자장부의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한 전자장부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장부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게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올바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에서 제외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91호, 2022.0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2호, 2023. 9.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 제11조제4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7조의2,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제2조제4호 관련)

번호	자료명	근거규정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4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5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6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8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9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10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1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I.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번호	자료명	근거규정
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1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7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18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19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20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5서식

[별지 제1호서식]

승인번호 : 제20 - 호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

귀 업체의 20 년 월 일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1. 업체정보

상호 (명칭)		구 분	① 폐기물배출자 ② 폐기물운반자 ③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주 소			
ID		PW	

2. 유의사항

- ①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1개 업체에 1개만이 부여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②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운반자에게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하고, 폐기물운반자는 운반 도중에 인계번호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려는 경우에는 인계번호를 함께 전달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문의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인계서 수정 요청서

요청 업체 정보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연락처	Tel () -	
			H.P () -		
			FAX () -		
전자인계서 입력 내역					
인계번호		대상폐기물			
폐기물배출자		폐기물운반자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수정요청내역					
수정사유					
첨 부	확인서류(계량증명서 등)사본 1부.				
<p>위와 같이 전자인계서 수정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 ○ ○ 주식회사</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이사 ○ ○ ○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귀하</p>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전자인계서 대체입력서

1	행정기관 제출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폐기물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⑤폐기물 종류		⑥폐기물 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폐기물성질·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처 리 장 소															
폐기물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⑬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⑯운반일자				년 월 일									
	⑰운반장소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하는 자	⑱업 소 명		⑲사업자등록번호						-	-						
	⑳사무실 소재지															
	㉑시설 소재지															
	㉒시 설 명		㉓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㉔처 리 방 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⑮확인	폐 기 물 배 출 자		폐 기 물 운 반 자				폐 기 물 처 분 또 는 재 활 용 하 는 자									
	직위: . . . 성명: (서명)		직위: . . . 성명: (서명)				직위: . . . 성명: (서명)									

210mm × 297mm(노카본지 50g/㎡)

〈작성요령〉

(뒤 쪽)

1. 작성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으십시오.
-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적을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 가. 폐기물배출자는 ①부터 ⑱까지, ㉔의 해당사항을 적어 확인·서명(폐기물관리책임자)하고, 운반자로부터 ㉕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운반관리책임자)을 받습니다.
- 나. 폐기물운반자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하는 자로부터 ㉕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 다.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⑲부터 ㉓까지의 해당사항을 적고 처리되는 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한 후 ㉕에 확인·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 가. ① 번호: 폐기물배출자 별로 대체입력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나. ②·⑪ 및 ⑲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다. ③과 ④ 업소명 및 소재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과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포함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 라. ⑤와 ⑥ 폐기물 종류 및 폐기물분류번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 마. ⑦ 위탁량: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적습니다.
- 바. ⑧ 폐기물 성질·상태: 해당 번호로 적습니다.
- 사. ⑨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적습니다.
- 아. ⑩과 ⑫ 업소명 및 소재지: 폐기물운반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를 적습니다.
- 자. ⑬ 차량 종류: 차량 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란부터 ⑰란까지 운반순서에 따라 모두 적습니다.
- 차. ⑮ 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서 발급한 수집·운반 차량증의 번호를 적습니다.
- 카. ⑱ 업소명, ㉐ 사무실소재지, ㉑ 시설소재지, ㉒ 시설명: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업소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 타. ㉔ 처리방법: 처리방법란에는 “위탁처리(재활용)”와 같이 적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처리방법		분류번호
자가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중간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위탁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중간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03], 안정화[210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별지 제6호서식]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

사업장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올바로시스템 ID	
올바로 시스템 담당자 내역	성 명		부 서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용 도	<input type="checkbox"/> 회원가입 <input type="checkbox"/> 공인인증서 등록 <input type="checkbox"/> 아이디 확인 <input type="checkbox"/> 비밀번호 확인		
<p>상기인은 본 사업장 소속으로 재직 중이며 올바로시스템 업무 담당자(위임자)임을 확인합니다.</p> <p>20 . .</p> <p style="text-align: right;">대 표 자 (인)</p> <p>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p>				

4.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3-233호, '23.9.27 일부개정]

환경부 고시 제2023-233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한다.
2. “전송”이란 현장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치”란 현장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4. “처리자”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자로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공동으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를 포함한다)
 - 나.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다.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유·무선망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해 처리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6. “자동전송단말기”란 제3조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7. “차량용단말기”란 제3조의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전송프로그램”이란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해 배포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전송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란 현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보관장소”란 허가받은 사업장 내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보관창고, 옥외장소 포함)을 말한다. 단, 매립시설과 퇴비화시설은 제외한다.
11. “공인계량시설”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현장정보의 범위) ① 계량값은 제3호의 폐기물 중량을 말하며, 제1호의 차량총중량에서 제2호의 차량중량을 뺀 값을 의미한다.

1. 차량총중량: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의 중량을 계량한 값
 2. 차량중량: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의 중량을 계량한 값
 3. 폐기물중량: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폐기물의 중량을 계산한 값
- ②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중량을 해당 차량의 제원 정보 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차량의 중량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치정보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이동한 경로의 위도와 경도를 시간단위로 표기한 값을 말한다.
- ④ 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처리자의 사업장에 진입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3. 보관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보관량 등 보관상태(액상폐기물을 용기 등에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① 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운반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과 영상정보
 - 가. 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1) 수집·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 다만, 계량시설이 차량 계량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계량시설(인수하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계량값을 측정하여 전송할 수 있다.
 - 2) 진입로,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 나. 가목 이외의 자
 - 1)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
 - 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전송 제외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 위치정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진입로 영상정보 : 동일한 사업부지(도로, 담장 등의 경계가 없는 공간을 말한다)에 소재한 배출자의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 ③ 처리자는 제1항의 현장정보 중 위치정보는 차량용단말기를 통해, 계량값과

영상정보는 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계량값을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발급된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④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에 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하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센터의 장이 열람(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처리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전송방법을 지켜야 하며, 센터는 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이동통신단말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정보의 전송방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현장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센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현장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장치의 종류와 규격) ① 처리자가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종류와 위치 등은 [별표 1],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전송프로그램 설치(온라인 업데이트 포함) 및 사용을 위한 적절한 성능이나 보조장치를 갖춰야 한다.
4. 그 밖에 센터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장치의 상세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③ 센터는 장치의 상세규격과 이를 만족하는 장치를 지정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

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장치의 설치) ① 처리자가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용단말기는 위치정보 수신 오류 및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 단말기 안테나 및 이동통신 안테나를 놓아야 하며,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차량 내부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자동전송단말기는 계량시설과 직접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목이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가.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설치 위치, 대수, 높이, 초점거리 등을 조절해야 한다.
 - 나. 화각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영상촬영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 다. 촬영된 영상이 자동전송단말기에 전송되도록 연결해야 한다.
 - 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및 실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 마.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 바.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해야 하며, 하우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해야 한다.
- ②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을 지켜야 한다.
- ③ 센터는 처리자가 장치를 설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장치의 구성도를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전송프로그램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처리자는 센터가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을 해당 장치에 설치해야 한다.

-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자로부터 계량증명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가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③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전송프로그램과 설치방법을 게시해야 한다.

④ 처리자는 자신의 장치 유형에 적합한 전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센터가 게시한 전송프로그램의 설치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장치의 제작·납품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⑤ 처리자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센터에 전송시험을 요청하고, 현장정보가 적정하게 전송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전송 기한 및 주기) 현장정보의 전송 기한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값: 폐기물을 계량한 즉시, 다만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한 경우에는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
2. 위치정보: 실시간 위치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3. 영상정보: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전송 주기를 따른다.

제9조(장치의 점검·관리) ① 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현장정보가 적정하게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센터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센터로 전송하는 영상정보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규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센터가 현장정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치의 점검 및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센터는 장치를 점검 및 확인한 후 필요 시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2주 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제10조(장애 통보 및 조치방안) ① 처리자는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제출한 처리자는 15일 이내에 현장정보를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처리자가 제9조제5항 또는 제1항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전송 수단 및 조치방안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처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 조치방안 등을 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처리자는 제4항에 따른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복구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송하지 못한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①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현장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2.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수집한 현장정보를 위·변조하는 행위

②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처리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동전송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함체형 자동전송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 ③ 임시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로 탈부착 및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없도록 봉인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 ④ 제4조제7항에 해당하는 수집·운반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 ⑤ 센터의 소속직원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⑥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전송된 현장정보를 해당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또는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기관이 관할 대상 업체가 전송한 현장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106호, 2022.6.9.>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대상별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 2.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제2조(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한 적용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허가를 받은 자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용 시기는 제1조제3호를 따른다.

부칙 〈제2023-364호, 2023.6.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33호, 2023.9.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제5조 및 제6조 관련)

구분		설치대상 장비	위치	대수
수집·운반하는 자		차량용단말기 ¹⁾²⁾	수집운반차량	1대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	계량시설 설치 의무자 ³⁾	자동전송단말기	사무실	1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진입로	1대 이상
			계량시설	1대 이상
	보관장소 ⁴⁾		1대 이상	
	그 외의 자	자동전송단말기	사무실	1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진입로	1대 이상
보관장소 ⁴⁾			1대 이상	

[비고]

- 1) **전용차량**은 차량용단말기를 **임의로 탈착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임시차량**은 필요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시거잭** 등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차량용단말기를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 나)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에서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임시차량
 -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임시차량
- 3) 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4) 보관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 가) 보관장소를 2개소 이상 보유한 처리자는 보관량이 가장 많은 보관장소(이하 “대표 보관장소”라 한다)에 설치한다.
 - 나) 대표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및 영업대상 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별로 각각 선정하여 설치한다.
 - 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센터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센터가 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센터가 지정한 주기에 맞춰 보관장소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별표 2]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성능 규격(제5조 관련)

1. 자동전송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주 요 사 양
구성 부품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네트워크카드, 보조기억장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가속기 ¹⁾²⁾ 를 갖추어야 한다.
운영체제	Windows 10 이상 (IoT, Home, Pro)
세부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가. 제11조에 따른 합체형으로 구성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주 요 사 양
사용자 인터페이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일체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계근시설을 직접 연결할 있도록 시리얼(IN/OUT)을 갖추어야 한다.

[비 고]

- 1) 인공지능가속기는 영상분석이 가능한 그래픽카드 등을 말하며, 세부 규격은 센터에서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2)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진입로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인공지능 가속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는 다음의 성능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주요 사양
화소수	200만 화소
통신프로토콜	ONVIF Streaming Specification지원
세부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3. 차량용 단말기는 다음의 성능 및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항 목	주요 사양
구성 부품	GPS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성능 규격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처리 하여야 한다. 전원은 차량의 시동과 동시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세부 성능 규격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
운용조건	프로그램 설치형(SW구동형)인 경우 운영체제 Android 5.1 이상 위치전송 전용단말기형(펌웨어형)인 경우 센터에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전송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 고 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업종	⑤현장정보 ID
	⑥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⑦위치정보 전송제외 대상 구역 정보	용역명	
		수행기간	
		발주기관, 연락처	
	⑧위치정보 전송제외 대상 차량 정보	차량번호	
		원격수집단말기 ID (인증번호)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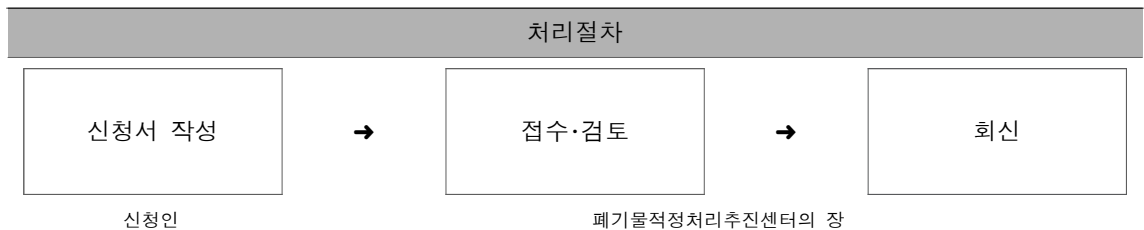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전송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영상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업종	⑤ 현장정보 ID
	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⑦ 제외신청 영상정보	진입로 (), 계량시설 (), 보관장소 ()	
	⑧ 제외사유		
	⑨ 증빙자료 (※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상정보 전송 제외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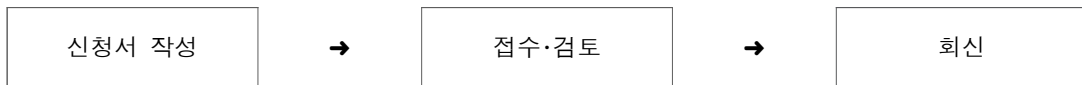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업종	⑤현장정보ID
	⑥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⑦전송의 장애 발생 현장정보 종류	<input type="checkbox"/>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 <input type="checkbox"/> 영상정보(<input type="checkbox"/> 진입로 <input type="checkbox"/> 계량시설 <input type="checkbox"/> 보관장소) <input type="checkbox"/> 계량값	
	⑧장애 발생 전송 장치의 정보 ※ 해당 항목만 기재	차량용 단말기	단말기 장착 차량번호 () 단말기 종류 (<input type="checkbox"/> 고정형 <input type="checkbox"/> 탈부착형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설치형 <input type="checkbox"/> 이동통신단말기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동전송단말기	원격수집단말기ID(인증번호) ()
	⑨장애 발생일시		
	⑩장애 발생사유		
⑪장애 복구계획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센터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 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장애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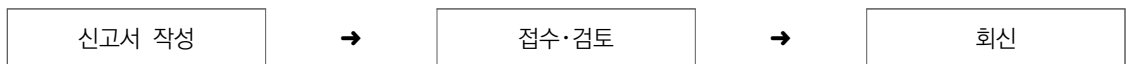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1. 전송 장애가 발생하여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한 폐기물에 대한 인계인수 자료(올바로시스템 등록자료 등) 2. 장애 복구계획에 대한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④란은 배출자, 수집·운반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등으로 기재하고, ()에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인 건설, 지정, 사업장일반을 기재 (예) 중간재활용업(지정)
- ⑩ 전송장치의 수리, 보수, 교체 등의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AS접수증, 설치견적서, 공사계획서 등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장

II

순환골재 관련 규정



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17.9.27 일부개정]

환 경 부 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5호, 2014.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 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II. 순환골재 관련 규정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 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아.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2.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7-176호, '17.9.27 일부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7-176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에 적용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제3조(공사구간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공사 구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공사구간으로 계산한다.

② 도로의 유지·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 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4조(포장면적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한다.

② 도로의 유지·보수공사의 포장면적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조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2호,
'21.12.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2호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총 칙

1. 일반사항

-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 (2) 폐콘크리트 또는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3) 본 기준에서 규정한 각 용도별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 이외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공사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조사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 (1) 본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및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요령」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송·배전 지중관로 공사시방서」 등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을 따른다.
- (2) 본 기준 및 (1)항의 도서 또는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및 관련기준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인·허가된 지침·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 (2) 「순환토사」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한다.
- (3) 「폐콘크리트 모암」이라 함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덩어리로서 골재 생산공정을 거치기 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말한다.
- (4) 「콘크리트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생산에 사용되는 굵은골재 또는 잔골재를 말한다.
- (5)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벽돌 등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순환골재를 말한다.
- (6)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나 굴착공사 시에 발생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기계 파쇄 또는 가열 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보충재(천연골재, 아스팔트 또는 재생첨가제 등)을 가하고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혼합물을 말한다.
- (7)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라 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절삭 또는 철거한 것과 생산·시공과정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파쇄·분쇄, 이물질 분리·선별, 체가름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8)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라 함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중간처리(파쇄, 체가름)한 골재를 말한다.
- (9)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다.
- (10) 「추출골재」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아스팔트를 제거한

골재로,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얻어지는 아스팔트와 분리된 골재를 건조시켜 얻는다.

- (11) 「재생아스팔트」라 함은 구재 아스팔트에 신재 아스팔트(또는 재생첨가제)를 첨가하여,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 (12) 「신재 아스팔트」라 함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써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 (13) 「재생첨가제」라 함은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재료를 말한다.
- (14) 「천연골재」라 함은 석산, 수중 등 자연에서 채취한 굵은골재나 잔골재로서,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 (15)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천연골재와 신재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적절한 배합설계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 (16) 「하수관로」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 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17) 「구조물의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는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 (18) 「구조물의 되메우기」라 함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 기초 및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해 터파기한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 (19) 「성토」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흙쌓기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발현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 (20) 「복토」이라 함은 성토용과 동일하게 흙쌓기 공사에 해당되며, 다짐 등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 (21) 「매립시설 복토」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매립된 폐기물 또는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작업(일일복토, 중간복토 및 최종복토)를 말한다.
- (22) 「송·배전 관로」라 함은 발전소에서 변전소 또는 수용가로 전압·전류의 성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II. 용도별 품질기준

1. 도로 기층용

1.1 입도조정 기층

1.1.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도로의 입도조정 기층 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및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등에 따른다.

1.1.3 입도조정 기층의 품질기준

(1) 골재의 입도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범위를 초과하는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 1.1〉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크기 입도	통과질량백분율 (%)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RB ¹⁾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RB - 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1) RB : 기층용 순환골재

(2) 골재의 품질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골재의 품질은 〈표 1.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2〉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기준	시험방법
소성지수	4 이하	KS F 2303
수정 CBR (%)	80 이상	KS F 2320
마모감량 (%)	40 이하	KS F 2508
안정성 (%)	2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1%)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기준) ¹⁾
		KS F 2576

1)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1.1.4 입도조정 기층의 승인 및 시험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1.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3〉 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목	시험방법	빈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m ³ 마다 2) 필요시마다	-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도	KS F 2502 현장부설 중 또는 공장에서 시료채취	1) 골재원마다 2) 채질변화시마다 3) 1,000m ³ 마다	2.5mm : ± 15% 0.08mm : (±6%)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 배합을 수정
현장밀도*	KS F 2311	1) 500m ³ 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200m ³ 마다 : 2차선 기본	95% 이상	• 다짐작업을 계속 •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 개소는 치환

(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1.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2.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등에 따른다.

1.2.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적정한 강도·내구성·입도를 지녀야 하며, 품질은 〈표 1.4〉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기준	시험방법
점토덩어리 함유량 (%)		0.25 이하	KS F 2512
연한석편 (%)		5.0 이하	KS F 2516
밀도 2.0g/cm ³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KS F 2513
흡수율 (%)		7 이하 (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을 파쇄하여 사용할 경우 8%)	KS F 2503
절대 건조 밀도 (g/cm ³)		2.2 이상	KS F 2503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 이하 ¹⁾ (질량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2)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적절한 강도·내구성·입도를 지녀야 하며, 품질은 〈표 1.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기준	시험방법
소성지수		9 이하	KS F 2303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KS F 2507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0.08mm체 통과 량) (%)		3 이하	KS F 2511
점토덩어리 함유량 (%)		1 이하	KS F 2512
이물질 함유량 (%)	유기 이물질	1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 이물질	1 이하 ¹⁾ (질량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3) 골재의 입도

순환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1.6>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 1.6>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호칭지수(mm)	구분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최대지수 40mm	최대지수 25mm
50		100	-
40		90~100	100
25		-	90~100
20		50~85	50~100
10		40~75	40~75
5		25~60	35~60
0.6		10~30	10~30
0.08		0~8	0~8

(4)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1.7>에 따른다.

<표 1.7>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구분	건식	비고
일축압축강도 (f_7 , MPa)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도로 보조기층용

2.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노상에 가해지는 하중이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2.3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 (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2>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 2.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기준	시험방법
소성지수		6 이하	KS F 2303
수정 CBR치 (%)		30 이상 ¹⁾	KS F 2320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모래당량		25 이상	KS F 2340
액성한계 (%)		25 이하	KS F 2303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기준) ²⁾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50이상이어야 한다.

2) 순환골재에 혼합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이물질로 불류하지 않는다.

<표 2.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크기 입도종류	통과질량백분율 (%)							
	75mm	50mm	40mm	20mm	5mm	2.5mm	0.4mm	0.08mm
RSB ¹⁾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R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1) RSB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2.4 보조기층의 승인 및 시험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2.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표 2.3> 보조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목	시험방법	빈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 전 500m ³ 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m ³ 마다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m ³ 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3. 콘크리트용

3.1 일반사항

- (1) 본 기준은 폐콘크리트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 중에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이 가능한 골재의 품질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2)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제2장 일반 콘크리트 및 제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재료 규정에 따른다.

3.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 (1)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표 3.1>의 품질과 <표 3.2> 또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서 규정하는 입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 (2)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골재 속에 포함된 비닐, 플라스틱, 목재, 종이 등의 함유량이 총 골재 용적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 (3)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슬레이트, 자기류, 적벽돌 등의 무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무기이물질 함유량이 총 골재질량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3.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분		순환 굵은골재	순환 잔골재
절대 건조 밀도 (g/cm ³)		2.5 이상	2.3 이상
흡수율 (%)		3.0 이하	4.0 이하
마모감량 (%)		40 이하	-
입자모양판정실적률 (%)		55 이상	53 이상
0.08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하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덩어리량 (%)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기준)	

<표 3.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mm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mm)	25	100	95~100		25~60		0~10	0~5				
		20		100	90~100		20~55	0~10	0~5				
순환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3.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운반 및 저장

- (1) 순환골재는 골재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입경에 따라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저장한다. 또한, 저장설비는 프리웨팅(pre-wetting: 살수·침수 등의 방법으로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수분 함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를 고려하여 적당한 경사를 둔다.
- (2) 순환골재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순환골재의 저장설비와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 대량 콘크리트 제조 설비)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 (1) 순환골재 생산 및 사용자는 본 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자를 지정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순환골재 생산업체 및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자는 KS A ISO 2859-0(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순환 굵은골재는 <표 3.3>, 순환 잔골재는 <표 3.4>와 같이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 <표 3.1>의 품질기준과 <표 3.2> 또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서 정하는 입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순환골재 생산자 및 순환골재 사용제품 제작자는 순환골재의 산지 및 종류, 치환률 등을 구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표 3.3>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입도		KS F 2502	공사 시작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가 바뀐 경우
절대 건조 밀도 (g/cm ³)		KS F 2503	
흡수율 (%)			
마모감량 (%)		KS F 2508	
입자모양판정실적률 (%)		KS F 2527	
0.08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KS F 2511	
점토덩어리량 (%)		KS F 2512	
알칼리골재반응		KS F 2545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안전성 (%)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무기이물질		

〈표 3.4〉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입도		KS F 2502	공사 시작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가 바뀐 경우
절대 건조 밀도 (g/cm ³)		KS F 2504	
흡수율 (%)			
입자모양판정실적률 (%)		KS F 2527	
0.08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KS F 2511	
점토덩어리량 (%)		KS F 2512	
알칼리골재반응		KS F 2545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무기이물질		

3.5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적용

- (1)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pm 4\%$ 이내로 한다.
- (3) 순환골재 사용시 목표슬럼프를 $\pm 20\text{mm}$ 이내의 관리를 권장한다.
- (4)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 (5)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MPa 이하로 하며, 사용비율은 〈표 3.5〉와 같다.
- (6)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7)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0mm 또는 25mm 이하로 하되, 가능한 20mm 이하를 권장한다.
- (8)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량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 \pm 1.5\%$ 를 충족하도록 한다.
- (9)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시,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에서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플라이애쉬(KS L 5405), 고로 슬래그 미분말(KS F 2563)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0) 순환골재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혼화재료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5〉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비율

설계기준강도 (MPa)	사용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용적의 30% 이하	

4.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4.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혼입하여 제조하는 벽돌, 블록 등과 같은 콘크리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의 품질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5.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5.1 일반사항

본 기준은 하수관로를 시공할 때 기초 또는 되메우기 재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래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순환 잔골재(이하 “모래대체 잔골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관련 규정의 적용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사용시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하수도시설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주택 건설 전문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따른다.

5.3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은 <표 5.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5.1>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기준	시험방법
최대지수 (mm)		10 이하	KS F 2502
소성지수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 (%)		10 이상	KS F 2320
0.08mm 체 통과율 (%)		15 이하	KS F 2511
점토덩어리 (%)		5.0 이하	KS F 2512
염화물(NaCl 환산량) (%)		0.04 이하	KS F 2515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 ¹⁾	

1)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을 무기이물질로 분류한다.

5.4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 (1)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시험은 <표 5.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 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5.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5.2>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목	시험방법	빈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다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마다	최대건조밀도 90%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 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2) 100m마다	-	
평판재하	KS F 2310	1)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	-
입도	KS F 2302	1) 토질변환시마다	-	-
함수비	KS F 2306	1)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6.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6.1 일반사항

-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발생 현장이나 처리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파쇄하여 제조한다. 이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이거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부속서 II-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6.2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반입 및 파쇄

- (1) 페아스팔트 콘크리트 반입시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반입시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잘게 절삭된 형태인 것과 덩어리인 것을 구분하여 저장하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페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최대 골재 크기 20mm 이하로 파쇄한다. 이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른 건설폐자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섞여 있을 경우에는 파쇄시에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6.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6.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의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폐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비율로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6.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구재 아스팔트 함량 (%) ¹⁾		3.8 이상	KS F 2354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²⁾		5 이하	FS F 2511
최대 입경 (mm) ³⁾		13 이하	
함수비 (%) ⁴⁾		5 이하	KS F 2550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 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 이하 (질량기준)	

- 1)·2) 구재아스팔트 함량 또는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의 품질 기준은 구재아스팔트 함량이 평균치를 벗어나거나 보조기층재 등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이외의 물질이 과도하게 혼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최대 입경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20mm 이하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수분 함량은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6.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쌓은 높이는 일반적으로 5m 이하로 한다. 저장 중에 입도가 다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선입선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6.5 품질관리 항목 및 빈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원재료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공사 현장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포장재의 원료와 특성이 현저히 다를 수 있으므로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있어 <표 6.2>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포장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른다.

<표 6.2>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종 별	시 험 항 목	시험방법	빈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추출골재입도 ¹⁾	KS F 2502	1) 월 1회 이상 검사 실시 2) 채취장소가 변경될 경우 또는 품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검사를 실시
	함수비 (%)	KS F 2550	
	구재 아스팔트 함유량 (%)	KS F 2354	
	씻기시험 손실량	KS F 2511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재생첨가제	점도, 인화점, 세척레이터 함유량	KS M 2248 KS M 2010	1) 2,000톤 마다 2) 장기 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입도범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마다 골재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7.1 일반사항

- (1) 동상방지층은 한냉 지역에서 포장층이 동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노상 상부에 일정 두께로 깔아 만드는 층을 말한다.
- (2)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동상방지층을 둔다.

7.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

- (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7.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순환골재는 투수성(물이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 얼음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 7.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 (%)		10 이상	KS F 2320
모 래 당 량		20 이상	KS F 2340
이물질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기준)	

7.3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 (1)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7.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 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7.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7.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m ³ 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m ³ 마다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500m ³ 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200m ³ 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8. 노상용

8.1 일반사항

- (1) 노상층은 포장층의 기초지반으로 도로노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 (2) 다층구조의 포장층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서 노상층이 과잉변형과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일정 두께로 깔아 다져야 한다.

8.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8.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8.1〉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100mm 이하	
5.0mm 통과율	25~100%	KS F 2502
0.08mm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PI, %)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 (시방다짐)	10 이상	KS F 2320
시공층 두께	200mm 이하	한층 마무리두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8.3 노상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 (1) 노상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8.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8.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3) 포장 각층의 시공에 앞서 시공기면의 뜬 돌, 그 밖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표 8.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다 짐	KS F 2312	1) 포설 후 다짐 전 1,000㎡ 마다 2) 재질 변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함수량	KS F 2306			
현장밀도	KS F 2311	1) 1,000㎡ 마다 (폭 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400㎡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프루프 롤링	50KN(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 접지압 5.6kg/cm ² 이상) 통과	1) 노상 완성 후 전 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시 마다	최대변형량 5mm 이하	다짐이 부족한 부위는 재다짐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부위는 함수량 조절 후 재다짐,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재하	KS F 2310	1) 2층 포설 후 200㎡ 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1,000㎡ 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K30) : 20kg/cm ² 이상 (아스팔트 포장), 15kg/cm ² 이상 (시멘트포장)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9. 노체용

9.1 일반사항

노체는 상부에 놓이게 되는 포장층을 지지하도록 노상면 하부에 시공되는 흙쌓기 부분을 말한다.

9.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9.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9.1>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수정 CBR치 (%)	2.5 이상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9.3 노체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 (1) 노체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9.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노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9.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9.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품 질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다짐도	KS F 2312	90% 이상	-	
시공시의 함수비	KS F 2306 KS F 2312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용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KS F 2312	1.5t/m ³ 이상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재하	KS F 2310	1) 3층 포설 후 150m 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2,000m ³ 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 (K30) : 15kg/cm ² 이상 (아스팔트 포장), 10kg/cm ² 이상 (시멘트 포장)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10.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10.1 일반사항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

- (1)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0.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0.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0.3>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0.1>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 (%)	10 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	25~100	KS F 2502
0.08mm 체 통과율 (%)	0~25	KS F 2301, KS F 2309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표 10.2>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소 성 지 수	6 이하	KS F 2303
액 성 한 계	25 이하	KS F 2303
모래당량 (%)	25 이상	KS F 2340
수정 CBR (%)	30 이상	KS F 2320
마모감량 (%)	50 이하	KS F 2508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표 10.3〉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소 성 지 수	NP	KS F 2303
수정 CBR (%)	10 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	25~100	KS F 2502
0.08mm 체 통과율 (%)	0~10	KS F 2301 KS F 2309
최대치수 (mm)	10 이하	KS F 2502
균등계수 (Cu)	5 이상	KS F 2324
곡률계수 (Cc)	3 이하	KS F 2324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10.3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 (1)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10.4〉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10.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3)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품질관리는 〈표 10.5〉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10.4〉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100m ³ 마다 1회 이상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 마다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95% 이상	
평판재하	KS F 2310	1) 3층마다	지지력계수 (K30) : 30kg/cm ³ 이상 (아스팔트 포장), 20kg/cm ³ 이상 (시멘트 포장)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표 10.5〉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충족한 경우의조치 및 참고사항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 마다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2) 100m마다	노상 : 95% 이상 노체 : 90% 이상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11. 성토용

11.1 일반사항

건설공사의 성토용 흙쌓기 등에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은 〈표 11.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1.1〉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최대치수 (mm)	1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10 이상	2.5 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	25~100	-	KS F 2502
0.08mm 체 통과율 (%)	0~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10 이하	-	KS F 2303
다짐 후 건조밀도 (t/m ³)	-	1.5 이상	KS F 2312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12. 복토용

12.1 일반사항

-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사용하는 복토용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2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복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2.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2.1>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13. 매립시설의 복토용

13.1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적용범위

- (1) 본 기준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순환골재(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사용할 때 적용한다.
-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 (1)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2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차(5)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매립시설의 복토용은 순환골재를 사용하되, 최종복토용 중 식생대층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다.

- (3) 복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3.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3.1>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험방법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14. 기타 사항

본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에 건축·토목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되 해당분야의 책임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Ⅲ.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규제의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711호, 2017. 12. 15.>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852호, 2021. 12. 22.>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39호,
'22.1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39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서류의 보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 할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연장 할 수 있다.

1.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의 일부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제3조(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산시설
2. 품질관리인력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4. 환경 및 안전관리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중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품질관리 실적 및 설비기준은 제외한다) 제3호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심사(안전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국제기준인증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

제4조(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신청자(인증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생산한 골재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항목과 시험결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골재생산에 투입되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야적시설
2. 생산공정 및 인증용 골재보관시설
3. 채취된 골재의 양 및 용도
4. 기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취하되 골재생산 현장에 입회하여 신청자가 준비한 건설폐기물의 투입으로부터 생산공정, 골재생산 확인 후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 심사의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최소 5일 이상의 차이를 두고 2회에 걸쳐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이 중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제외한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되, 당해 인증신청용도와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시험기관은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1회에 한하여 채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⑤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신청자를 입회 시켜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에는 채취자와 입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규칙 제8조제3항에서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심사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품질시험 및 확인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시험기관을 정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와 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1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만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1회에 한하여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2.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위계(爲計) 또는 위력(威力)등으로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조의 별표 1 또는 제4조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2. 규칙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 및 재심사
3.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 필요한 부문의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7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어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순환골재 생산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의 적정성
2.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등의 적정성
3. 순환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

제9조(위원회 수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의 예산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서 교부시 명시할 내용)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증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인증업자가 인증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과 본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처의 품질요구 수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재심사) 삭제

제12조(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등) ① 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1. 반입된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종류별 관리현황
2. 순환골재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설비에 관한 사항
3. 순환골재 품질관리인력 및 시스템 운영내용
4.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결과 및 관리의 내용
5. 순환골재 판매 또는 공급 등에 대한 실적
6.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등

② 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서류 등을 즉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 등에 관한 사항 등 품질인증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완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제14조(품질인증 관련 조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업자 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사책임자 또는 인증된 순환골재의 사용자가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3. 삭제.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삭제.
 - ③ 삭제.

제15조(품질인증 관련 분쟁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취소 등의 요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인증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 ①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7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직무)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4의 인력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운영지침)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서, 기간,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등 업무제반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제·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인증업무 책임자는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증업무 처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심사원의 관리와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과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83호, 2016. 4.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별표 2]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별표 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4]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원의 인력편성기준

[별표 5]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후관리 업무절차

[서식 1] 시료채취확인서

[별표 1]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1) 생산시설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파쇄·분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 (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 (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처리능력 400톤 이상 (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 (굵은골재), 5mm 이하 (잔골재)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재 최대치수 2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분리·선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물질 선별횟수 1단계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
건설 폐기물 야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쇄·분쇄 시설의 1일 처리 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출 것(제4조제2항제1호 관련) 		
순환골재 보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1일 생산능력 기준으로 3일분 이상의 생산한 순환골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보관장소는 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와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분저장이 가능하고 토분 및 이물질 등의 혼입방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도별 순환골재 보관시설 (5mm 이하, 25mm 이하의 골재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을 갖출 것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 (4%이상)를 유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 (4% 이상)를 유지할 것
계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식 이상을 갖출 것 (계근시설 등) 		
굴삭기 등 주요 건설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킷용량 0.6 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또는 로더 1대 이상을 갖출 것 		

2) 품질관리인력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품질 관리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품질관리 인력 1인 이상 확보할 것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서 규정한 초급품질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에서 순환골재 품질관리 및 시험분야 경력을 인정받은 자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품질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의 품질확보에 대한 방침을 설정·유지 할 것 		
품질관리 조직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업무조직을 갖출 것 ■ 품질관리 수행절차를 갖출 것 ■ 년도별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유지할 것 ■ 골재의 생산을 위한 파쇄, 분리선별, 세척 및 혼합(필요시에 한함)등의 운전조건 및 관리규정을 갖출 것. 		
품질관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 품질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골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실적을 유지할 것 ■ 골재 판매 및 공급관련 서류를 기록·유지할 것 		
품질관리 설비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p style="text-align: center;">〈시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도 (KS F 2502)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의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p style="text-align: center;">〈시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도 (KS F 2502) -밀도 및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 잔골재 KS F 2504)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의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p style="text-align: center;">〈시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의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품질시험 및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되, 1년 중 1회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운영 실태조사 시 채취한 시료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환경 및 안전관리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환경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의 환경관리 방침을 설정·유지할 것 ■ 환경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 환경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 분진·폐수·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유지할 것 ■ 경영자의 안전관리 방침을 설정·유지할 것 ■ 안전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 안전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 경영자의 환경방침을 이행할 수 있고,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별표 2]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1. 도로공사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도로보조기층용 또는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수수료 산정기준

구 분		항목 및 내역
신규 신청 (1개용도)	가. 인건비	○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로부터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제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경 비	○ 여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통신료, 관리비 등 기타 제경비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개최비용
	다. 일반 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신규신청 (2개용도)	가. 인건비 및 경비	○ 1개 용도 신청시 비용의 30%를 할증 적용한다.
	나. 일반 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운영실태 조사	가. 인건비	○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경 비	○ 여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통신료, 관리비 등 기타 제경비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일반 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신규신청 (3개용도)	가. 인건비 및 경비	○ 1개 용도 신청시 비용의 60%를 할증 적용한다.
	나. 일반 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기 타		○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비용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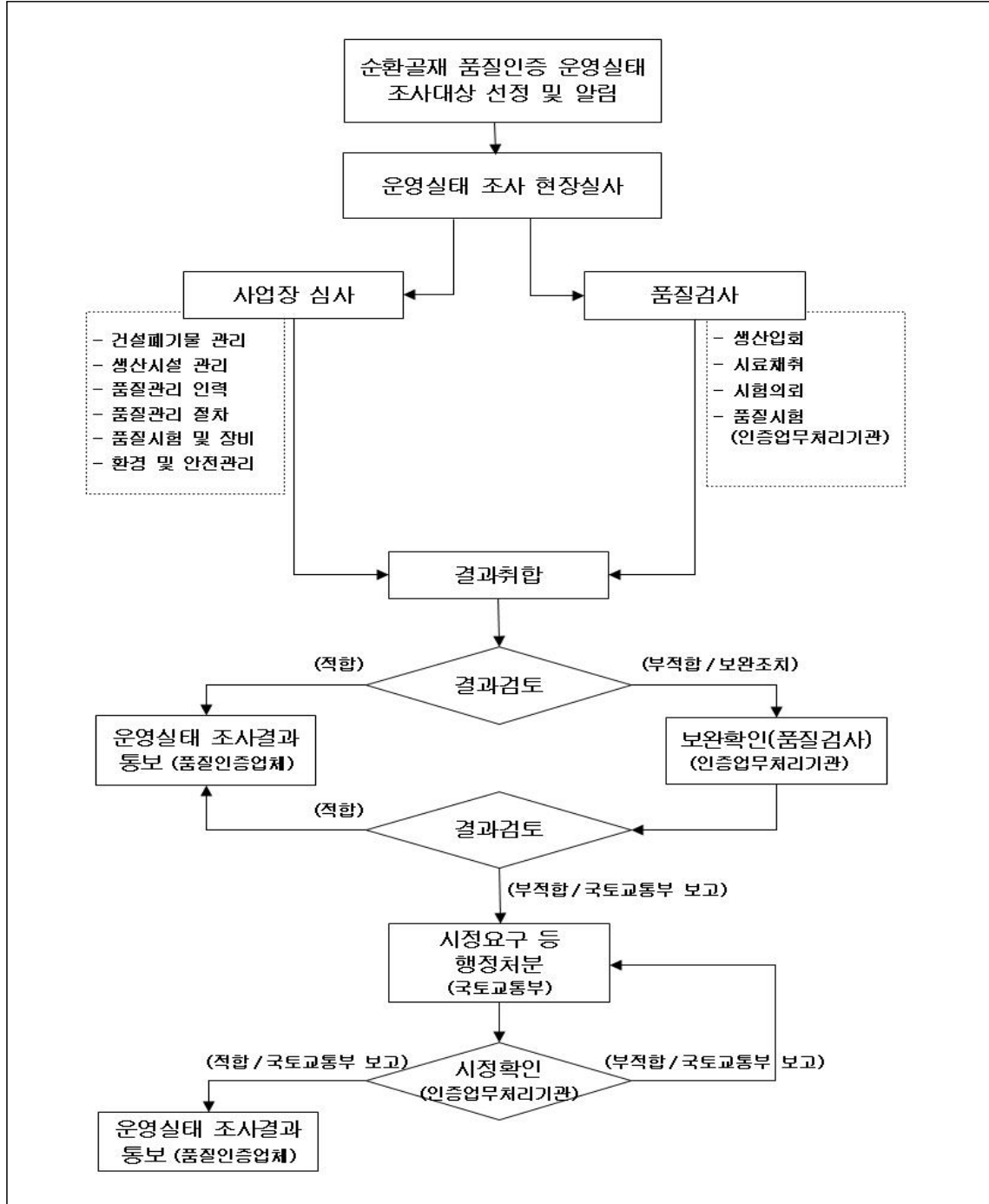
[별표 4]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원의 인력편성기준

구 분	사 업 장 심 사	품 질 검 사
인 력	<p>○ 업무 책임자 : 1인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동 업무에 종사한 자</p>	
	<p>○ 사업장심사 담당자 : 2인 이상 건설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골재, 품질,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또는 인증 등의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p>	<p>○ 품질검사 담당자 : 2인 이상 토목·건축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토목·건축전공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골재, 건설폐기물, 품질시험 관련 연구 등의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p>
	<p>○ 보조자 : 1인 이상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골재,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또는 인증 등의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p>	<p>○ 보조자 : 1인 이상 토목·건축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골재, 건설폐기물, 품질시험 관련 연구 등의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p>

[별표 5]

순환골재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업무절차



[별지 제1호 서식]

시료채취확인서

업 체 명				
주 소				
품질인증용도	용 도		최대치수	
	<input type="checkbox"/> 도로공사용(RSB-1, RSB-2)		mm	
	<input type="checkbox"/>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input type="checkbox"/> 굵은골재	mm	
		<input type="checkbox"/> 잔골재	mm	
<input type="checkbox"/>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mm		
품질인증 순환골재 생산용 투입 건설폐기물 성상	<input type="checkbox"/> 폐콘크리트 <input type="checkbox"/> 건설폐재류 <input type="checkbox"/> 기 타 ()	<input type="checkbox"/> 폐아스콘 <input type="checkbox"/> 혼합건설폐기물		
시료채취일자				
인 증 번 호	℃			
시료채취내역	품 명	규 격	채취량	
시료채취자 (신청자 또는 인증업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5.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3호,
'22.7.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3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기준 완화 적용 범위
1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퍼센트
20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퍼센트
2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퍼센트

③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건설진흥법」 제60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에 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522호, 2018. 8.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833호, 2022. 7. 2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I

**처리용역 입찰 및
평가 관련 규정**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19.10.8 일부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사대상) ①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계약 및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2(신인도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제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4조제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도로명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 측정시스템'에서 확인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이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07-37호, 2007.3.8.>

제1조(시행일) 이 평가기준은 공포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평가기준의 시행일과 함께 환경부 예규 제264호「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05.10.17)」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각호의 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함에 있어 순환골재 품질인증 항목은 '08.7.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모두 만점 처리 한다

부 칙 <제2007-116호, 2007.7.27>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평가기준은 고시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 사목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시점 개정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8-163호, 2008.11.14>

- ① (시행일) ①(시행일) 이 평가기준은 고시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09-173호, 2009.8.24.>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50호, 2011.10.2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중 “Ⅲ. 신인도” 항목 “2.기타” 분야 중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환경·건설분야 신기술의 ‘검증’, 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중 도로공사용과 콘크리트용을 모두 보유한 경우” 평가항목의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4-119호, 2014.7.25〉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8.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2조 관련)” 중 “Ⅲ. 신인도” 항목 “2.기타” 분야 중 “가.~바.” 평가항목의 경우는 2015.1.1부터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9-28호, 2019.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중 “I.당해용역이행능력” 항목 “나.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항목(수주금액 2억원 미만에 한한다)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평가항목의 경우는 이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고시 시행 전까지 수주금액 2억원 미만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는 만점으로 처리한다.

부 칙 〈제2019-179호, 2019.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최초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2.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II.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100
III. 신인도	1. 부적정처리 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3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1	
2. 부정당업자 제재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 이상에 해당되는 자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0.5 △0.15
	가.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15
3. 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인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0.15 +0.15

III. 처리용역 입찰 및 평가 관련 규정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15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0.15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0.15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15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0.15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5
IV.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p>※ 입찰가격 평점산식</p> <p>◎ 평점(점) = 30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p> <p>- '은 절대값 표시임</p> <p>-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p> <p>-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p> <p>※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p> <p>※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p>			

1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1호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5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 역수행금액 (18)	수집·운반	A. 100%이상 : 9 B. 80%이상 ~ 100%미만 : 8 C. 80%미만 : 7																																							
		중간처리	A. 150%이상 : 9 B. 100%이상 ~ 150%미만 : 8 C. 100%미만 : 7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2)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6	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3	A. 100km 미만 : 3 B. 100~150km 미만 : 2.85 C. 150~200km 미만 : 2.70 D. 200km 이상 : 2.55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6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인·검증기술</th> <th>인증기술</th> </tr> </thead> <tbody> <tr> <td>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td> <td>2.0</td> <td>1.7</td> </tr> <tr> <td>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td> <td>1.3</td> <td>1.0</td> </tr> </tbody> </table>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5 B. 기본배점 : 4.0	구 분	인·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2.0	1.7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	1.3	1.0																												
		구 분	인·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2.0	1.7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	1.3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6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0.5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35 B. 기본배점 : 5.5																																						
용역이행능력평가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th> <th>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th> <th>평 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30</td> <td>0.60</td> </tr> <tr> <td>B</td> <td>20</td> <td>0.45</td> </tr> <tr> <td>C</td> <td>15</td> <td>0.30</td> </tr> <tr> <td>D</td> <td>6</td> <td>0.15</td> </tr> <tr> <td>기본배점</td> <td>-</td> <td>4.40</td> </tr> </tbody> </table>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30	0.60	B	20	0.45	C	15	0.30	D	6	0.15	기본배점	-	4.4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30	0.60																																								
B	20	0.45																																								
C	15	0.30																																								
D	6	0.15																																								
기본배점	-	4.40																																								
2. 경영 상태 (2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회사채·기업신용평가</th> <th>기업어음</th> <th>평 점</th> </tr> </thead> <tbody> <tr> <td>AAA</td> <td>-</td> <td>20.0</td> </tr> <tr> <td>AA+, AA0, AA-</td> <td>A1</td> <td>20.0</td> </tr> <tr> <td>A+</td> <td>A2+</td> <td>19.85</td> </tr> <tr> <td>A0</td> <td>A20</td> <td>19.70</td> </tr> <tr> <td>A-</td> <td>A2-</td> <td>19.55</td> </tr> <tr> <td>BBB+</td> <td>A3+</td> <td>19.40</td> </tr> <tr> <td>BBB0</td> <td>A30</td> <td>19.25</td> </tr> <tr> <td>BBB-</td> <td>A3-</td> <td>19.10</td> </tr> <tr> <td>BB+, BB0</td> <td>B+</td> <td>18.95</td> </tr> <tr> <td>BB-</td> <td>B0</td> <td>18.80</td> </tr> <tr> <td>B+, B0, B-</td> <td>B-</td> <td>18.65</td> </tr> <tr> <td>CCC+ 이하</td> <td>C이하</td> <td>18.50</td> </tr> </tbody> </table>	회사채·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20.0	AA+, AA0, AA-	A1	20.0	A+	A2+	19.85	A0	A20	19.70	A-	A2-	19.55	BBB+	A3+	19.40	BBB0	A30	19.25	BBB-	A3-	19.10	BB+, BB0	B+	18.95	BB-	B0	18.80	B+, B0, B-	B-	18.65	CCC+ 이하	C이하	18.50
			회사채·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20.0																																					
			AA+, AA0, AA-	A1	20.0																																					
			A+	A2+	19.85																																					
			A0	A20	19.70																																					
			A-	A2-	19.55																																					
			BBB+	A3+	19.40																																					
			BBB0	A30	19.25																																					
			BBB-	A3-	19.10																																					
			BB+, BB0	B+	18.95																																					
			BB-	B0	18.80																																					
			B+, B0, B-	B-	18.65																																					
CCC+ 이하	C이하	18.50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5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II.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100
III. 신인도	1.부적정처리 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3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1	
2.부정당업자 제재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 이상에 해당되는 자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 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0.5 △0.12
	가.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12
3.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증점관리 대상업체'		+0.12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0.12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지원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12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0.12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지원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2 +0.12 +0.12 +0.12
IV. 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2호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5)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 (12)	수집·운반	6 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3)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4 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88 C. 150~200km 미만 : 1.76 D. 200km 이상 : 1.6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검증기술	인증기술
		순환골재 품질인증	5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	
		용역이행능력평가	3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4 B. 기본배점 : 3.5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4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8 B. 기본배점 : 4.6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20			0.48	
B	15	0.36			
C	6	0.24			
D	4	0.12			
기본배점	-	2.52			
2.경영 상태 (1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회사채·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5.0
			AA+, AA0, AA-	A1	15.0
			A+	A2+	15.0
			A0	A20	14.88
			A-	A2-	14.76
			BBB+	A3+	14.64
			BBB0	A30	14.52
			BBB-	A3-	14.40
			BB+, BB0	B+	14.28
			BB-	B0	14.16
			B+, B0, B-	B-	14.04
			CCC+ 이하	C이하	13.9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II.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계			100
III. 신인도	1.부적정 처리 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3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2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1	
2.부정당 업자 제재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 이상에 해당되는 자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0.5 △0.09
	가.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09
3.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09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0.09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09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0.09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0.09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09	

III. 처리용역 입찰 및 평가 관련 규정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0.09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IV. 결격 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 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p>※ 입찰가격 평점산식</p> <p>◎ 평점(점) = 60-4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p>※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p> <p>※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p>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 역수행금액 (11)	수집·운반	5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3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2	
		순환골재 품질인증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점	
	용역이행능력평가	3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A	15	0.36	
B				6	0.27		
기본배점	-	3.7	C	4	0.18		
			D	3	0.09		
기본배점	-	3.7	기본배점		2.64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9.91		
			BBB+	A3+	9.82		
			BBB0	A30	9.73		
			BBB-	A3-	9.64		
			BB+, BB0	B+	9.55		
			BB-	B0	9.46		
			B+, B0, B-	B-	9.37		
			CCC+ 이하	C이하	9.28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II.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계			100
III. 신인도	1.부적정처리 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 이상에 해당되는 자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6
	2.부정당업자 제재	가.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06
	3.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06 +0.06 +0.06 +0.06 +0.06 +0.06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0.06
		아.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6
IV.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p>※ 입찰가격 평점산식</p> <p>◎ 평점(점) = 70-20 ×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p> <p>- ‘ ’은 절대값 표시임</p> <p>-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p> <p>-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p> <p>※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p> <p>※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p>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 점																		
1.이행능력 (2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 수행금액(6)	수집·운반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	3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4)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인·검증기술</th> <th>인증기술</th> </tr> </thead> <tbody> <tr> <td>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td> <td>1.0</td> <td>0.88</td> </tr> <tr> <td>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td> <td>0.65</td> <td>0.53</td> </tr> </tbody> </table>			구 분	인·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8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53						
					구 분	인·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8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53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평가	2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th> <th>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th> <th>평 점</th> </tr> </thead> <tbody> <tr> <td>A</td> <td>6</td> <td>0.24</td> </tr> <tr> <td>B</td> <td>4</td> <td>0.18</td> </tr> <tr> <td>C</td> <td>2</td> <td>0.12</td> </tr> <tr> <td>D</td> <td>1</td> <td>0.06</td> </tr> <tr> <td>기본배점</td> <td>-</td> <td>1.76</td> </tr> </tbody> </table>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6	0.24	B	4	0.18	C	2	0.12	D	1	0.06	기본배점	-	1.76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6	0.24																				
B	4	0.18																				
C	2	0.12																				
D	1	0.06																				
기본배점	-	1.76																				
2.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기업신용평가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10.0																	
			BBB+	A3+	9.94																	
			BBB0	A30	9.88																	
			BBB-	A3-	9.82																	
			BB+, BB0	B+	9.76																	
			BB-	B0	9.70																	
			B+, B0, B-	B-	9.64																	
			CCC+ 이하	C이하	9.58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 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 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9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고, 특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 (4) 신기술 중 인·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분쇄, 분리·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운영한다. 이와 관련

하여 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페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페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업체평가신청서

- 입찰 등록 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업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00(분임)재무관 귀하

————— 접수증 —————

- | | |
|-------------|--------------|
| 1. 입찰등록번호 : | 2. 입찰대상용역명 : |
| 3. 회사명 : | 4. 제출자 : |

위건 용역 입찰적격업체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분임)재무관

[별지 제2호서식]

각 _____ 서

용역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업체평가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또는 처리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000(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 평가대상 용역

관 리 번 호	
입 찰 일 시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수 요 기 관	
입 찰 금 액	
예 정 가 격	
제 출 기 한	

2. 평가대상 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업 종 구 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평 가 평 점
계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별지 제5호서식]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기술보유자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p>■ 신기술·특허 보유 현황</p>				
신기술·특허 분야 (해당란 √ 표)		환경신기술 인증(중간처리)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중간처리) 건설신기술 지정(중간처리) 환경·건설신기술중 기타 신기술 환경·건설신기술외 신기술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유기술	신기술·특허명			
	신기술 인증·검증·지정기관 또는 특허 등록기관			
	신기술 인·검증번호 (지정번호)	인증 제000호, 검증 제000호 (지정 제000호)	발급일자 (지정일자)	
	특허번호	제000호	등록일자	
보유형태	신기술	단독개발 <input type="checkbox"/> 공동개발 <input type="checkbox"/> (개발자 :)	사용협약 <input type="checkbox"/>	
	특허	등록권자 <input type="checkbox"/>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input type="checkbox"/>		
기술개요				
유효기간				

※ 신기술·특허 관련 증서 사본 및 시설 처리공정도(신기술 적용공정 표시) 따로 붙임

[별지 제6호서식]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 량		단위	적용기술
		법정확보기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별지 제7호서식]

장 비 보 유 현 황


순번	장 비 명	수 량		단위	과부족
		법정확보기준	확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 연도		년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추정가격별 평가등급 ^{주)}	15억원 이상	1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위 사실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건설자원협회장 (직인)</p>				
<p>주)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건설 자원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해당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추정가격별 용역능력평가에서 정한 해당 등급을 말한다.</p>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지침, '23.7.17 일부개정]

환경부 지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

1. 총 칙

가. 목 적

본 지침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8호, 2019. 1. 25) 별표 제5호 나목 6)의 나) ~ 마)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에 대해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련 규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8호, 2019. 1. 25) (이하 “적격업체 평가기준”이라 한다)

다. 적용 범위

본 지침의 적용 범위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 평가를 위한 기술 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이하 “설치·가동 확인”이라 한다) 업무로 한다.

라. 확인서 발급기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마. 용어의 정의

- 1) “설치·가동 확인”이란 협회 회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기술적용시설이 설치·가동 중임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2) “서류심사”란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기술의 권리관계 및 유효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4) “현장심사”란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여부 확인과 해당 기술적용에 따른 최종 생산물의 품질확인평가를 말한다.
- 5)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받은 검증기술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분야 신기술 개발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받은 기술을 의미하며,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으로 평가한다. (사용협약자의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의 90%를 적용한다)
- 6) “현장평가확인서”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에 따라라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이 발급한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말한다.

2.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으며,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서류보완,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 현장심사 시 요구사항 보완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신 청

중간처리업체가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표 2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설치·가동 확인 신청자격, 기술내용 및 권리관계 등의 서류를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서류심사

- 1) 협회 회장은 중간처리업체가 제출한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해 다음 확인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의 권리관계 및 유효여부 등을 확인한다.

- 2) 서류심사 결과 제출서류 등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협회 회장은 신청업체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3) 환경·건설 분야 신기술 인·검증 기술을 보유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현장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검증기술의 개발자 또는 인·검증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자
-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로써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분야 신기술 개발자 또는 지정 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자

구 분	확 인 사 항
기술권리관계 및 유효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건설 분야 신기술 인·검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 : 1. 인·검증서 및 지정서 상의 개발자와 동일한지 여부 2. 당해 기술의 인·검증기간 및 지정기간의 유효여부 3. 당해 기술의 현장평가를 실시한 검증기술 여부 ※ 검증·지정 당시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개발자는 현장평가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자 : 1. 사용협약서 등 기술사용권에 대한 자료의 제출여부 2. 당해 기술의 인·검증, 지정 및 협약기간 유효여부 3. 현장평가확인서 제출여부 ■ 환경신기술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 : 1. 인증서 상의 개발자와 동일한지 여부 2. 당해 기술의 인증기간 유효여부 - 협약자 : 1. 사용협약서 등 기술사용권에 대한 자료의 제출여부 2. 당해 기술의 인증 및 협약기간 유효여부 ■ 특허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권자 : 1. 특허등록원부 상의 등록권자와 동일한지 여부 2. 당해 기술의 특허기간 유효여부 - 전용실시권자 : 1. 특허등록원부 상의 전용실시권자와 동일한지 여부 2. 당해 기술의 특허기간 유효여부

다. 현장심사

- 1) 협회 회장 서류심사 결과 기술의 권리관계 및 유효여부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심사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업체에게 심사일정,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통보한다.
- 2) 현장심사에서는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여부 확인과 순환골재 등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 3)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폐기물 투입부터 최종 생산물의 배출까지 최소 30분 이상의 처리공정을 가동해야 하며, 특허 및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이 정상적으로 설치·가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4) 해당 기술적용시설이 중간처리업체의 처리공정에 설치·가동되어 순환골재 등의 품질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 생산물을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업무처리기관(한국 건설기술연구원) 및 공인시험기관에 모두 의뢰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건설 및 환경신기술 개발자와 신기술 사용 협약자, 건설분야 신기술 보유자 중 현장평가확인서 발급일이 현장심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를 생략한다.

구 분	확 인 사 항
기술적용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신기술 인·검증 또는 건설신기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검증서 또는 지정서 상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 설치 여부 ■ 환경신기술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서 상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 설치 여부 ■ 특허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항 내 특허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 설치 여부
기술적용시설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공정 및 기술적용시설의 가동 여부(사진, 동영상 촬영)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 현장에서 채취한 최종 생산물(순환골재 등)의 품질평가는 인증업무 처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공인시험기관에 모두 의뢰하여 순환 골재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환경신기술 개발자는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 생략

- 5) 협회 회장은 기술적용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탈부착된 경우, 또는 특허공고 전문, 건설신기술 지정서, 환경신기술 인·검증서 등에서 요구하는 최종 생산물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생산물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보완 요구한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품질시험을 재실시한다.
- 6) 협회 회장은 신청업체가 보완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통보해야 하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 기술적용 시설 설치·가동 확인을 재신청할 수 있다.

라.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

- 1) 협회 회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과 성능이 확인된 경우 업체명, 기술의 내용 및 확인대상 시설, 시설확인 내용,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 별표 3에 따른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이하 “설치·가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 2) 설치·가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기술의 유효기간 또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로 하며, 설치·가동 확인 이후 설치·가동확인 업체의 당해기술 유효기간 또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설치·가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사후관리

- 가. 협회 회장은 설치·가동 확인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상태를 확인점검 해야 한다.
- 나. 사후관리는 별표 4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당시의 기술과 동일한지 여부와 실제 해당기술이 정상적으로 설치·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는 생략하되, 협회 회장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다. 기술적용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탈부착된 경우 협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대상 업체에게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3일 이내에 보관을 완료해야 한다.
- 라. 협회 회장은 업체가 보ван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설치·가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마. 부적합 통보를 받은 업체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확인을 재신청할 수 있다.

구 분	확 인 사 항
기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당시의 기술과 동일한지 여부
설치·가동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용시설의 기술범위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기술 설치 여부 ■ 전체 공정 및 기술적용시설의 가동여부(사진, 동영상 촬영)

4. 심의위원회 구성 등

- 가. 협회 회장은 서류·현장심사방법 및 적정 수행여부 확인, 최종 생산물의 품질평가 항목과 기준 마련, 설치·가동 확인서 적정 발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환경·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5. 현장심사인력 구성 등

- 가. 협회 회장은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순환골재 생산기술 관련 현장심사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 나. 현장심사 인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심사 시에는 외부 전문가 1인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일정상 동행이 곤란한 경우 협회에서 2명 이상 동행해야 한다.

1. 환경·건축·토목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이상 소지자
2. 환경·건축·토목분야 석사학위 또는 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3. 환경·건축·토목분야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타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협회 회장이 인정한 자

6.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및 취소

가.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설치·가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간처리업체는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 설치·가동 확인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 포함)
2.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3. 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4. 기술사용 협약기간 연장

나. 설치·가동확인서의 취소

협회 회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가동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가동 확인을 받은 경우
2. 사후관리 결과 탈부착, 미가동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4. 설치·가동확인 이후 당해 기술적용시설의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7. 설치·가동 확인 수수료

협회 회장은 서류·현장심사, 외부 전문가 자문비, 사후관리 등 설치·가동 확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신청업체에게 부과한다.

8. 시행일 및 경과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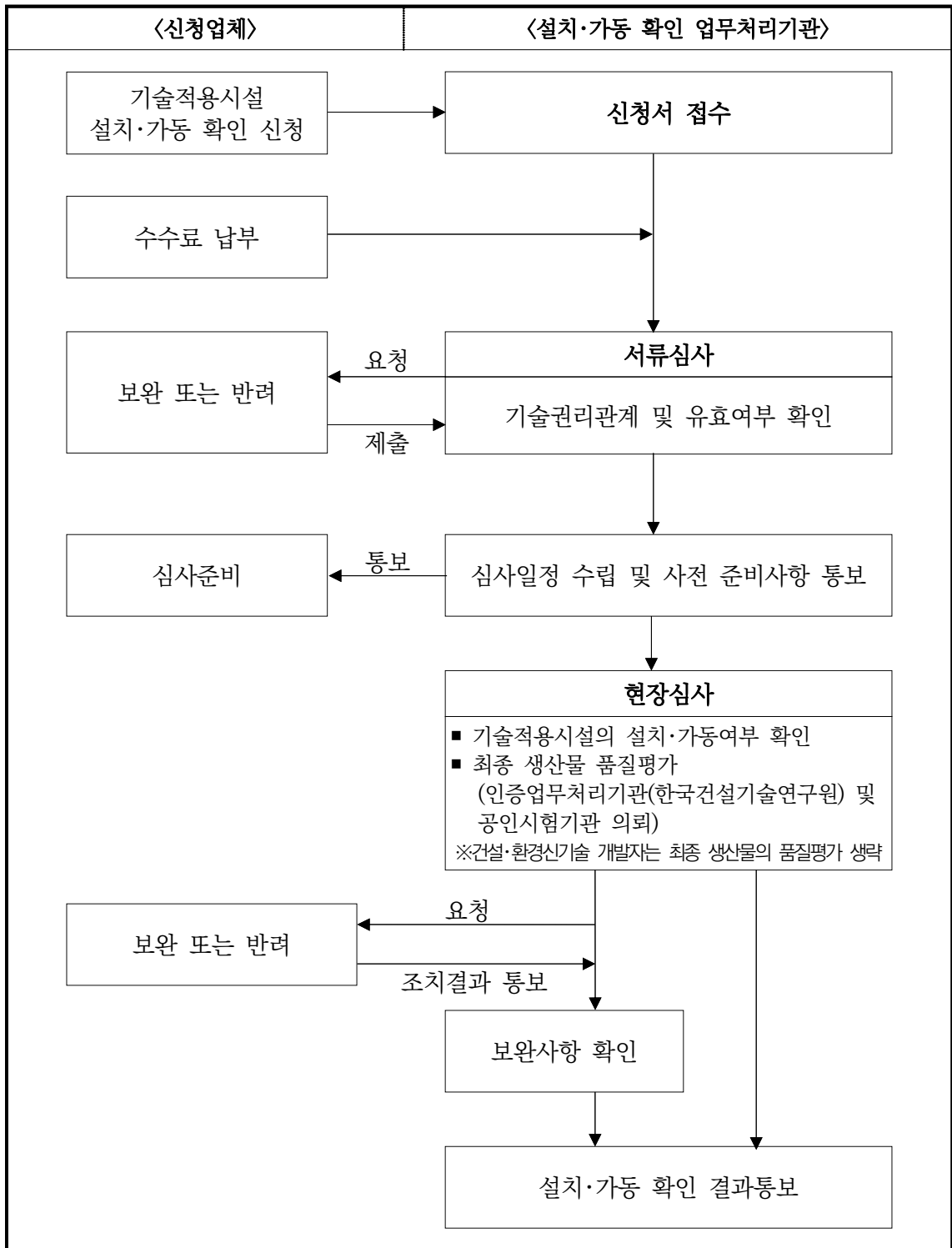
가.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현장평가확인서에 대한 심사 시행일 이전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에 대한 평가는 현장평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별표 1]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절차



[별표 2]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 신청서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Tel.	
		사업장		Fax.	
담당자	성 명		연락처		
기술내용 및 권리관계	기술명칭				
	기술분류	<input type="checkbox"/> 특허기술 <input type="checkbox"/> 건설신기술 <input type="checkbox"/> 환경신기술 인증 <input type="checkbox"/> 환경신기술 인·검증			
	기술권리 관계		인증·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일		
	유효기간	20 . . ~ 20 . .	협약기간	20 . . ~ 20 . .	
위와 같이 기술적용시설에 대한 설치·가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자원협회장 귀하					
구비서류(세부자료 별첨) : 1. 설치·가동 확인 신청자격 관련 자료 1부 2. 기술내용 및 권리관계 관련 자료 1부					

〈별첨〉

구 분	첨 부 서 류
설치·가동확인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서류 ■ 사업자 등록증
기술내용 및 권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용시설 배치도 및 공정도 ■ 환경신기술 인·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 : 인·검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당시 현장평가를 받지 않은 개발자는 현장평가확인서 제출 - 협약자 : 인·검증서, 사용협약서, 현장평가확인서 ■ 환경신기술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 : 인증서 - 협약자 : 인증서, 사용협약서 ■ 건설신기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자 : 지정서 - 협약자 : 지정서, 사용협약서 ■ 특허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권자, 전용실시권자 : 특허공고전문, 특허등록원부

[별표 3]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확인서

(앞 쪽)

기술(신기술·특허) 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제0000T0000-000호			
확인대상 기술의 내용			
기술명칭			
기술분류	<input type="checkbox"/> 특허기술 <input type="checkbox"/> 건설신기술 <input type="checkbox"/> 환경신기술 인증 <input type="checkbox"/> 환경신기술 인·검증		
등록번호		개발·등록권자	
인증·등록기관		기술유효기간	
기술적용 확인 대상시설			
시설명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시설확인내용			
시설확인일시		기술권리관계	
시설확인책임자		협약기간	
확인내용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환경부 고시 제2019-28호’에 의거 지정받은 신기술·특허기술 설치·가동 확인기관으로서 동 확인서를 발급합니다.</p> <p>(유효기간 : 2019.01.01~2019.12.31)</p> <p style="text-align: right;">2019. 01. 01</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자원협회장 (인)</p>		

- ※ 본 확인서 발급이후, 시설의 설치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그 내용(일시, 변경사항 등)을 협회로 반드시 통보하여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설치·가동확인서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 본 확인서는 상기의 기술범위에 한하여 관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뒤 쪽)

사후관리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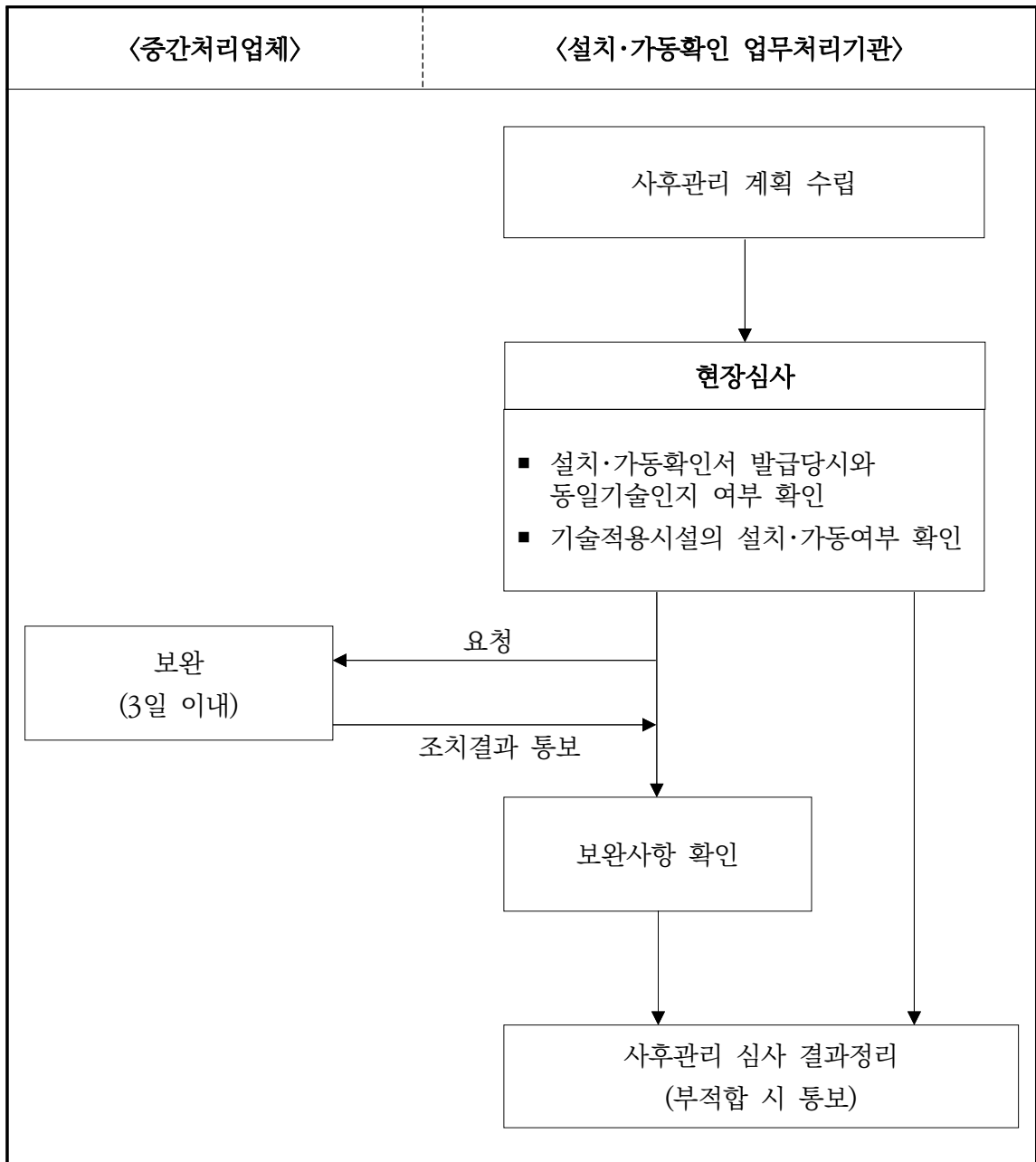
순번	점 검 일	점 검 결 과	점검 확인자
1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인)
2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인)


※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치·가동확인 업체의 장은 보완요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확인이 취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 발급이후, 시설의 설치 또는 변동(협약기간 종료·변경)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그 내용(일시, 변경 사항 등)을 협회로 반드시 통보하여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설치·가동확인서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본 확인서는 상기의 기술범위에 한하여 관련 시설이 설치·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별표 4] 사후관리 업무처리절차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30호, '18.1.16 일부개정]

환경부 예규 제630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절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동 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7조를 근거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 지침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 및 공시기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공시 업무는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수행한다.

제2장 용역이행실적의 신고 등

제5조(신고시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에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용역이행실적신고서 등 관계서류: 매년 2월 15일
2. 재무제표: 매년 4월15일(개인의 경우 6월 10일)까지

제6조(구비서류)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2. 제1호 외의 자료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 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규칙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3.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 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6.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의한 신인도별 가점 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8. 주변환경의 오염(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제7조(준수사항)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구비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실적금액은 기성실적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배출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실제 폐기물의 처리실적은 없이 배출자로부터 선 지급받은 처리비용은 용역이행실적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은 간인을 하거나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1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 공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성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일괄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은 업종별(중간처리, 수집·운반, 순환골재 판매, 기타 등)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 가능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6. 기술개발투자액 증명을 위한 확인서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투자액에 대하여만 제출하여야 한다.
7. 배출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한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제외하여야 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3호가목3)에 따라 수탁받은 '건설폐재류'에 대한 처리실적을 용역이행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구분·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용역이행 실적은 신고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실적신고 시 실적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용역이행실적 평가 및 공시

제8조(평가방법) ①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begin{aligned} & \text{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 \\ & \quad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end{aligned}$$

② 제1항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산식 중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times 70/100 \\ & \text{비고) 기본식은 [(최근 회계연도 3년간 총 실적} \div \text{영위월수)} \times 12] \times 70/100 \text{로 하되,} \\ & \quad \text{영위월수가 36을 초과할 경우 36으로 적용한다.} \end{aligned}$$

가.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다.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자본금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실질자본금평점} \times 10/100$$

가.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 1) 재무제표 상 중간처리업의 매출액이 구분되지 않아 겸업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용역이행능력평가를 위해 신고한 중간처리실적 신고액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 2) 동일 법인으로서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는 자의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되 개별 사업장의 중간처리실적을 반영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정한다.
- 3)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4) 겸업비율은 총 매출액에서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실질자본금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 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배 수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자본금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3.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순환골재판매액} + \text{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text{평균용역실적액} \times \text{기술능력평점} \times 5/100)$$

가.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나.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라. 기술능력평점은 다음과 같다.

파쇄시설 보유현황	1차 파쇄시설만 보유	2차 파쇄시설까지 보유	3차 파쇄시설까지 보유	4차 파쇄시설까지 보유	5차 이상 파쇄시설 보유
평점	1	1.25	1.5	1.75	2

마. 기술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 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력평가액}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times \text{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times 10/100$$

가.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 1)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 3)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다.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 \text{평균용역실적액} \times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times 10/100$$

가.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 \text{환경오염방z시설평점} + \text{환경오염방z인력평점}$$

1) 환경오염방z시설평점은 환경오염방z시설 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세차시설은 방z시설 유형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방z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구분	방z시설 유형	평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1. 중간처리 시설	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	2	3
	나. 파쇄·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	1	2
	다.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 공정용 살수시설과 이송 시 분진 방z덮개를 갖춘 경우	0.5	1

III. 처리용역 입찰 및 평가 관련 규정

시설구분	방지시설 유형	평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2. 보관시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을 갖춘 경우	0.1	0.2
	나.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춘 경우	0.1	0.2
	다. 폐기물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를 갖춘 경우	0.1	0.2
	라. 바닥포장을 갖춘 경우	0.1	0.2
	마. 지붕 덮개시설을 갖춘 경우	0.1	0.2
3. 세륜·세차 시설	가.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0.5	0.5
	나. 세륜시설, 세차시설 중 하나만 갖춘 경우	0.25	0.25

2)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은 다음의 등급별 해당 기술인력의 수에 해당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등급	기술인력	가중치
1. 기술사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5
2. 특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5
3. 고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등급	기술인력	가중치
4. 중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0.75
5. 초급 기술자	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0.5

다.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6. 신인도평가액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신인도반영비율

가.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나. 신인도반영비율의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2퍼센트
- 2)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표창 또는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우: +1퍼센트

다. 신인도반영비율의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 3)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 4)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 5)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1퍼센트

제9조(평가서류 검토) ① 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용역이행실적 중 타 업종 및 중간처리실적 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탁한 폐기물 처리실적, 재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실적 등)의 실적이나 기성실적이 아닌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용역이행실적신고서 상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총 금액이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및 위·수탁계약서의 합계금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합계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가 검인한 정기결산서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4.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검토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5.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수행한 용역의 경우 타사 용역실적은 제외하였는지의 여부
 6.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용역이행실적신고서 상 합계금액 등 평가 서류의 내용과 그 구비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7. 각 서식의 내용이 작성요령에 맞도록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
 8. 제출된 서류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실적에 대한 보정·보완 여부
 9. 제출된 신고서류가 평가기관의 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
- ②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출한 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보완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시 등) ① 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 결과를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용역이행능력평가액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6.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③ 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지침) 협회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IV

기타 규정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790호, '23.6.28 일부개정)

환경부 예규 제790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1.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및 이행보증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자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자,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시행규칙 [별표7] 비고6에 해당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폐기물처리

업자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 중 단서에 해당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자 그리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음.

나. 대상업무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 대상, 이행보증금 산정, 이행보증 시기 및 방법, 미이행업체에 대한 처분 등 이행보증과 관련한 사항

(2) 방치폐기물의 처리관련 업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한 업체에서 방치폐기물 발생시 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주체, 처리대상 범위 및 처리절차 등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방치폐기물

- (1)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처리금지 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한 경우, 시·도지사(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허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법 제40조 제4항)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건설폐기물법 제2조제6호)

나.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의 허용 보관량을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해당 업체의 1일 처리능력 1일분이상 30일분이하에 해당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량

다.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이하 “허용보관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등)

4. 이행보증 시기 및 범위

가. 법 제40조와 건설폐기물법 제42조에 따른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 영업시작(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용시작신고) 전까지(폐기물을 수탁하기 전까지)
-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임시 보관장소로 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한 경우에도 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의 범위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의 2배(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1.5배)
- 폐기물처리 신고자
 - 신고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보관량)의 2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의 2배(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1.5배)
- 이행보증 대상 보관량의 산정
 - 보관량은 해당 업체에서 보관하고자 하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가능한 최대용량을 허용보관량등으로 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중 창고나 용기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면적과 동 면적에서 보관 가능한 높이를 고려한 보관용적을 허용보관량등으로 한다.

(2) 초과보관량(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 해당업체의 허용보관량의 2배와 초과보관량의 5배
 -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해당 업체 허용보관량의 1.5배와 초과보관량의 3배

다. 이행보증 방법 : 법 제40조제1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 (1) 법 제43조나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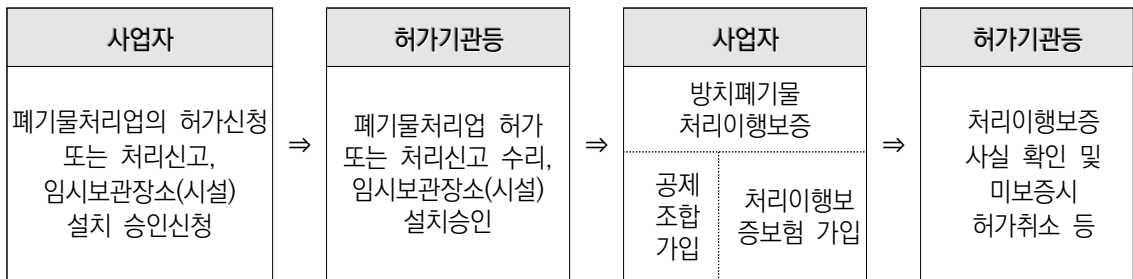
II. 보증절차

1. 관련규정 : 법 제40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4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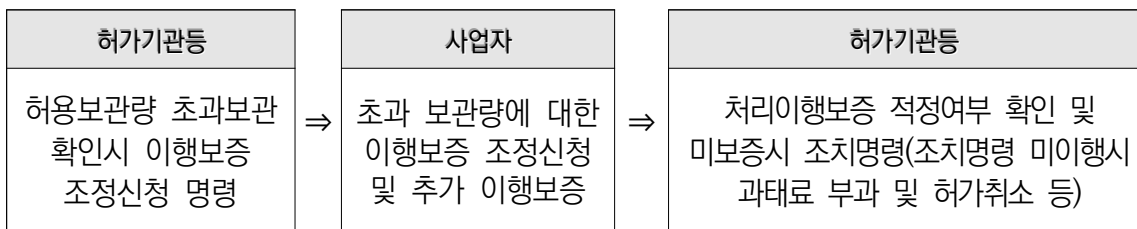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사업자(이하 “이행보증 대상자”라 한다)는 허기를 얻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이행보증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이하 “이행보증”이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증대상

(1) 허용보관량 범위 내에서의 이행보증



(2)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을 개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사용 시작 신고)하기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 제27조

제1항제3호나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허가기관등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임시 보관장소 또는 임시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을 한 후 폐기물을 보관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보증 없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가. 이행보증대상자가 업종별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결성한 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공제조합 가입자”라 한다)와 공제조합에서는 분담금 납부사실을 허가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탈퇴신청을 하거나 제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허가기관등에 통보토록 공제조합에 요청한다.
 - 공제조합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제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지체없이 다른 이행보증방법(법 제40조 제1항제2호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을 한 후 관할 허가기관등에 보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허가기관등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통보될 경우 해당자의 폐기물 반입 및 보관현황 등을 점검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허용 보관량 초과에 따른 처분과 함께 초과보관량을 포함하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가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초과 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험의 가입기간

- (1)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의 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3.6.20.일 영업 시작을 위해 최초로 보험가입시(가입기간 : 2023.6.20 ~ 2024.12.31, 보증기간 : 2023.6.20 ~ 2025.3.1)
- (3)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는 보험가입일 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보증보험 가입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1년 단위(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1년 이상 연단위)로 하고, 보증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액을 산출하되, 처리단가는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종류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 허용보관량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2
 -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1.5

- 허용보관량 초과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5
 -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
- 보험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다. 보험가입시 보험금 수령인 지정

- (1) 이행보증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허가기관등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험에 실제로 가입하는 이행보증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보험금액 조정 또는 보험계약 갱신

- (1) 다음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갱신일 또는 재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지도 점검 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변경허가 대상) 또는 처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단가 변경(관련고시 개정)
 - 허용보관량의 변경(변경허가 대상)
 -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계속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 (2)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8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계약갱신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계약의 갱신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1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

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기간(보증기간이 아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갱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자가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법 제40조제8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계약 갱신을 명한 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갱신 기한 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자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 갱신계약 시 아래에 따라 보험계약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시 보험기간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 시(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보험약관 심사방법

- (1) 허가기관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인출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가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이행보증 대상자에게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4. <삭제>

5. 관련서류 작성요령

가. 산출내역서

- (1) 폐기물 종류별로 허용보관량을 각각 산출한다.
- (2) 폐기물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하되, 고시된 품목에 해당품목이 없을 경우는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유사한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한다.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허용보관량이 폐유 5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페페인트 300톤인 경우의 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 종류	허용 보관량	처리단가(예시)	안전율	산출금액
폐유	50톤 ×	297,000원/톤	× 2 =	29,700,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	607,000원/톤	× 2 =	121,400,000원
페페인트	300톤 ×	462,000원/톤	× 2 =	277,200,000원
계				428,300,000원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유 2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을 보관하는 경우 초과보관량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 종류	허용 보관량	처리단가(예시)	안전율	산출금액
폐유	20톤 ×	297,000원/톤	× 5 =	29,700,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 ×	607,000원/톤	× 5 =	30,350,000원
계				60,050,000원

6. 이행보증의 적정여부 검토요령

가. 최초 이행보증 및 조정사유 발생시

-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보관시설 설치승인서의 허용보관량과 일치여부 확인
 -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 (3) 현장 확인
 - 허가·승인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으로 한다)시 제출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형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보관형태 :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폐기물 보관형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관중인 폐기물더미의 밀면적과 높이 등이 허가등을 위해 제출한 면적 및 높이 이내인지 확인한다(필요한 경우 계측을 실시한다).
 -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을 계산한 후 폐기물종류별 비중을 곱하여 허용보관량을 산정한 후 초과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실제 비중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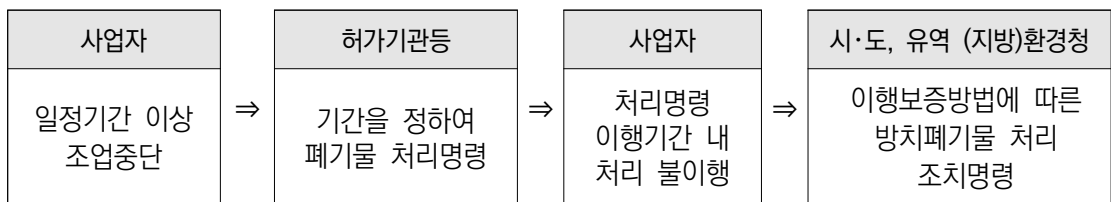
-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한 경우
 - 당초 제출된 보관시설 등의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당초 보관형태대로 변경하여 보관토록 조치한 후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도 점검시

- (1)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최초 이행보증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량(보관용적 × 비중)을 확인 또는 계측하여 허용 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 필요시 실제 보관량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및 초과 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보관여부 확인
 -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반입폐기물을 바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며, 허가기관 등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III.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처리절차〉



1. 조업정지시의 폐기물처리명령 요건

(법 제40조제2항, 건설폐기물법 제43조제1항)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이상 조업을 중단(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 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 경우

※ 조업중단 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 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업중단 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동물성잔재물 및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그 밖에 쉽게 부패·변질되는 폐기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판단기준

- 보관용기 부식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등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3일 이상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명령 가능

(3) (1) 및 (2) 외의 경우 : 1개월

나. 건설폐기물의 경우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을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다.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 지정

(1) 허가기관등은 폐기물량과 환경오염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명령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등은 1개월의 기간이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명령 기간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다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내에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처리명령 기간내에 자체처리가 곤란하여 재위탁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탁처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을 승인할 수 있다.

2. 이행보증 방법별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조치

가.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 처리를 명령하여도 처리명령 기간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일 경우 허가기관등은 다음의 방법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이행보증 방법별 조치절차

(1)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 허가기관등이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하는 때에는 주변 환경의 오염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허가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기관등이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할 수 있는 처리량

- 폐기물처리업자 방치폐기물 :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1.5배 이내)

- 폐기물처리 신고자 방치폐기물 : 신고 보관량의 2배 이내
-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폐기물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제조합은 처리명령 기한내에 방치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허가기관등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허가기관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기간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명령과 함께 법 제65조나 건설폐기물법 제63조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가 공제조합에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그 시점에서 폐기물보관량을 확인하여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 허가기관등은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이행보증금액 등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 특히,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기관등은 즉시 보관폐기물량을 조사하여 이행보증대상자에게 처리를 명하는 한편, 그 사실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고, 이행보증대상자가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즉시 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 보험금은 허가기관등에서 수령한 후 방치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이하 “위탁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허가기관등이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다.

○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실제 처리한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한다.
- 위탁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후 허가기관등에 보고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임장을 발급하고, 보험회사에 위임장 소지자에게 정해진 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통보한다.

(3) <삭제>

(4) 이행보증조치로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 허가기관등은 조업정지 등에 따른 처리명령시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보관량과 함께 수탁관련 자료(반입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을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는 등 방치폐기물이 처리 완료될 때 까지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IV. 행정사항

1. <삭제>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현황 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허가등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할 시·군·구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3.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5일까지(하반기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 및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61호, 2012.8.8〉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 〈제553호, 2015.8.10〉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95호, 2016.12.28>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

1. 총괄표(업체수)

구 분		계	공제조합 가입	보증보험 가입
합 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소 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의료폐기물			
폐기물 중간 처분업자	소 계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기계적 처리 전문		
		화학적·생물학적 처리 전문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재활용 전문		
		재활용 이외		
의료폐기물				
폐기물 최종 처분업자	소 계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소 계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처리이행보증방법별 업체명단

가. 공제조합가입

구 분	업체수	업체명	조합명	가입일자	이행보증 폐기물량(톤)	비 고 (업종)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자						

* 이행보증 폐기물량은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물량(허용보관량 × 2)을 기재

* 비고는 처리대상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을 기재

나.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구 분	업체수	업체명	보증보험 가입기간	보증보험 보증기간	보험금액 (천원)	비 고 (업종)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보증보험 보증기간'은 보험 종료일에 보증기간(60일)을 합한 보증 종료일까지를 기재

* 비고는 처리대상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

관할 행정 기관	업체명	소재지	업종	이행 보증 방법	발생현황			처리현황			잔량	향후 처리계획 및 처리방법	비고			
					폐기물 종류	발생량	발생일자	발생 원인	폐기물 종류	처리일자				처리량	처리방법	

※ 작성요령

- 1) 발생일자는 조업중단 후 처리명령 시 정한 처리기간일 다음날을 기재
- 2) 이행보증방법 : 공제조합 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구분하여 작성
- 3) 방치폐기물 처리현황 : 처리량은 신규 발생 방치폐기물 중 폐기물종류별 처리한 량을 기재. 처리방법은 행정대집행, 조치명령(처리업자, 토지소유자, 경락자 등), 이행보증금(조합분담금, 보증보험)으로 구분 기재
- 4) 잔량 : 신규 발생량 중 처리한 양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폐기물 양을 기재
- 5) 향후 처리계획 및 처리방법 : 행정대집행, 조치명령(처리업자, 토지소유자, 경락자 등), 이행보증금(조합분담금, 보증보험)으로 구분 기재
- 6) 비고 : 보관상태, 처리완료 예정일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환경부 고시 제2021-259호, '22.1.1 전부개정]

환경부 고시 제2021-259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259호, 2021. 12. 3.>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97,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607,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462,000
폐농약, 폐유독물	644,000
폐석면	645,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1,514,000
폐산, 폐알칼리	462,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52,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99,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46,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152,000
건설폐기물	62,000
의료폐기물	1,397,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237,000
식물성잔재물		176,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462,000
	기 타	297,000
폐윤활유		95,000
폐축전지		102,000
폐드럼		19,000
폐산, 폐알칼리		462,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58,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76,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52,000
폐전선		238,000
폐오일필터		55,000
폐타이어		92,000
폐플라스틱 용기		62,000
폐규조토, 폐점토		63,000
폐페인트		389,000
광재	일반	146,000
	지정	152,000
분진	일반	146,000
	지정	152,000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합성수지		269,000
폐합성섬유		70,000
폐식용유		51,000
폐아연		56,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297,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146,000
	지정	152,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54,000
폐촉매		61,000
폐합성고무		114,000
철강슬래그		52,000
폐주물사, 폐사		59,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52,000
폐섬유류		66,000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81,000
	피혁가공잔재물	178,000
폐석회, 폐석고		52,000
폐목재		75,000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의료폐기물		1,397,000

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동물성잔재물	237,000
식물성잔재물	176,000
유기성오니	176,000

- 비고 : 1.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2.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 0원으로 적용한다.

3.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환경부 예규 제627호, '18.1.4 제정)

환경부 예규 제627호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2. “징수기관”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생활폐기물
 - 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사업장폐기물
3. “처분량”이란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양(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2장 부담금의 산정·부과

제3조(부담금 납부의무자 정보 관리 등)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해야 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
2.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4. 지방환경관서의 장

③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세부 산정 및 감면 기준, 부과·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안내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신고서 등 접수)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서 및 첨부서류
2.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납부의무자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납부의무자가 영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영 별표 6에 따른 폐기물 유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 영 별표 6 제2호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중 열경화성수지인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금속성 폐촉매, 광물류로 제조된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해당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로 배출되기 이전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정보(MSDS) 등 해당 품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영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17조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

2.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 1)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③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규칙 제19조제3항 각 호의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1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2. 규칙 제1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나.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유효기간 이내의 인증서에 한한다)
 3.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4. 규칙 제19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 나.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 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서류
 5. 규칙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른 증명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6. 규칙 제1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증명 자료
 -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승인신고서(폐기물을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
 - 나.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
 -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7. 규칙 제19조제3항제7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증명 자료
 - 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에 따라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④ 징수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 증명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징수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납부의무자가 속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납부의무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분량 및 감면대상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신고서 등 검토) ① 징수기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누락·오류 사항이 있어 부담금의 산정이나 감면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전자팩스·기관메일 또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의 적정성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의 적정성
 3.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는 처분시설의 적정성
 4. 적용 요율 등 부담금 산출기준 적용의 적합성
 5. 기타 제출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6. 납부의무자의 이전연도 부담금 납부 실적 변동 추이
- ④ 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담금 감면대상의 적정성
 2. 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분량의 적정성
 3. 부담금 감면대상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4. 부담금 감면기준 적용의 적정성
5. 기타 감면대상과 기준 관련 인증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 ⑤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
 6. 그 밖의 처분량 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징수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부담금 산정·부과)** ① 징수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납부의무자의 전년도 처분량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 ② 징수기관은 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신고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을 추가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 ⑤ 징수기관은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제7조(연도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특례)**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20조에 따라 연도 중에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가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등을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이사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담금 신고서를 접수하고 부담금을 산정·부과한다.
- ④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금액을 산출하고 해당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담금의 징수

제8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부담금
3. 가산금

제9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징수기관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

-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납부고지) ① 납부고지서는 전산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징수기관은 전산출력 된 납부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교부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로 송달할 수 있다.

- ④ 납부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 ⑤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고지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변경 및 재발급) ① 징수기관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입된 납부금액 등의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이미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받은 사항 또는 반환된 감면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징수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징수기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내용, 담보제공내용,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조문 등을 조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징수기관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및 관계조문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⑤ 징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① 징수기관은 징수유예를 승인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마. 양도성 예금증서

2. 납부보증보험증권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납부보증서
 4. 토지
 5.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2. 납부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부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 ④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부과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특히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 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① 징수기관이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장 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의 기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부담금의 환급) ① 징수기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이하 “부담금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당초 부담금의 납부일

2. 그 환급금이 분할납부 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 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납부일

② 부담금환급금은 환급대상이 된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지급할 수 있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

④ 해당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징수기관은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의무자와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징수기관은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납부의무자의 은행 계좌로 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⑧ 부담금환급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징수기관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담금, 가산금을 지체 없이 환경개선특별 회계에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는 징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부담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부담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부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장 체납처분

제20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 조사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
3. 전화가입 사항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 재산권, 채권 등
5. 주민등록지 거주여부
6. 기타 참고사항

제21조(압류)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
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할 것

3. 「국세징수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4.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 ③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으로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부의무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압류재산의 매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10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징수기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징수기관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4조(체납처분 유예) ① 징수기관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2를 준용한다.
- ⑤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체납액 분할납부) ① 징수기관은 체납된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독촉기한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액의 납부를 분할하여 유예할 수 있다.

- ②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이 되어 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가산금 포함)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징수기관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2회로 하고 분할납부 기한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징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승인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징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자에게 매회 납부기한 20일전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의 전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⑥ 징수기관은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부담금 분할 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회생절차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① 징수기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체납처분과 부담금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행정심판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징수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 중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확인한다.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제28조(행정소송계류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① 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을 계속한다.

②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 등을 하여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원부 기록·보존) 징수기관은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원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처리시스템으로 작성·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명령 및 채권가압류·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문서

제31조(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33조(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납부의무자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절차·방법 및 운영상의 세부기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34조(과태료 처분 의뢰 절차)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 후 요청한다.

1.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발송에 의해 문서발송일로부터 20일(우편발송기간 5일 포함)의 지도기간을 정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 이 경우 필요시 재독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독촉 또는 재독촉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필요한 보고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조사

확인서 등에 명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 방문 시 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 처분 요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IV. 기타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독촉장

폐기물처분부담금 독촉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오른쪽 「폐기물처분부담금 독촉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에 적힌 부담금이 채납되었으니, 독촉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1. 독촉납부기한까지 채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됩니다.
2. 이 독촉고지서를 분실하였을 시는 독촉장 발급기관에서 고지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채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5항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징수관계과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납부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채납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년 월 일

(인)

수납인

납부안내

영수증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징수관계과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납부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채납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년 월 일

(인)

수납인

[별지 제2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납부고지서 발부번호			
고지서 발부일자	년	월	일
부과금액			
이의신청 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 청 인 :

관 할 부 서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20 년 월 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환급내역

납부자 번호	환급대상자 (주소, 대표자, 전화)	납부금액	납부일 (환급결정일)	환급금액	환급사유	비고

[별지 제5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채권보전방법			

분 할 납 부 신 청 사 항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횟수 및 금액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 고
제 1 기	월 일		
제 2 기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통지서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체 납 처 분 부 담 금						
세 목(코드)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분할 납부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분 납 금 액 및 횟 수						
회 수	세 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계	부담금	가산금
합 계						

귀하가 20 . . . 신청한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납부 의무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기간		20부터 20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내역 (분할납부금액 및 회수)							
회수	세 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 액			미납여부
				계	부담금	가산금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취소하는 금액의 내용							
세 목		연도(분기)		납부기한		금 액	
취소년월일	20						
취소의 이유							
<p>귀하에게 20 승인한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p>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직인</p> </div> </div>							

[별지 제8호서식]

폐 기 물 처 분 부 담 금 원 부

부과 이련 번호	남부의무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주민) 등록 번호	폐기물 종류	처분량 (kg)	산정액 (원)		감면액 (원)	징수결정액 및 납부액(원)					비고 (복측, 체납 처분 등)		
						소각 매립	소각 매립		계	제1회분	제2회분	부과액 (납부 기한)	납부액 (납부 일자)		부과액 (납부 기한)	납부액 (납부 일자)

